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차 례

I. 개관	1
1. 조직 및 정원	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3
4. 재무결산	6
5.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검토내용	10
II. 결산 검토	14
1.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1001-100)	14
가. 결산 개요	14
나. 보수(110-01)에서 기타직보수(110-02)로 연례적 전용 부적정	16
2.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1011-200)	19
가. 결산 개요	19
나. 청년인턴 채용에 따른 인건비 예산 전용 부적정	20
다. 법률사무종사 제도 운영의 효용성 검토 필요	24

3.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31
가. 결산 개요	31
나. 국내장기교육 훈련자 국외교육여비 적정 편성 필요	32
다. 법령해석국 관련 별도 사업예산 편성 방안 검토 필요	34
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운영 강화방안 모색 필요	41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45
가. 결산 개요	45
나. 콘텐츠 현행성 점검 방안 마련 필요	46
다. 블로그기자단 운영의 실효성 검토 필요	48
5. 법령심사지원(1032-300)	54
가. 결산 개요	54
나.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 강화 필요	55
6. 법제정비(1032-301)	60
가. 결산 개요	60
나. 알기 쉬운 법제 구축 :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61
7. 행정법제 혁신(1032-302)	73
가. 결산 개요	73
나. 입법영향분석 취지에 맞는 연구용역 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74
[참고자료] 최근 3년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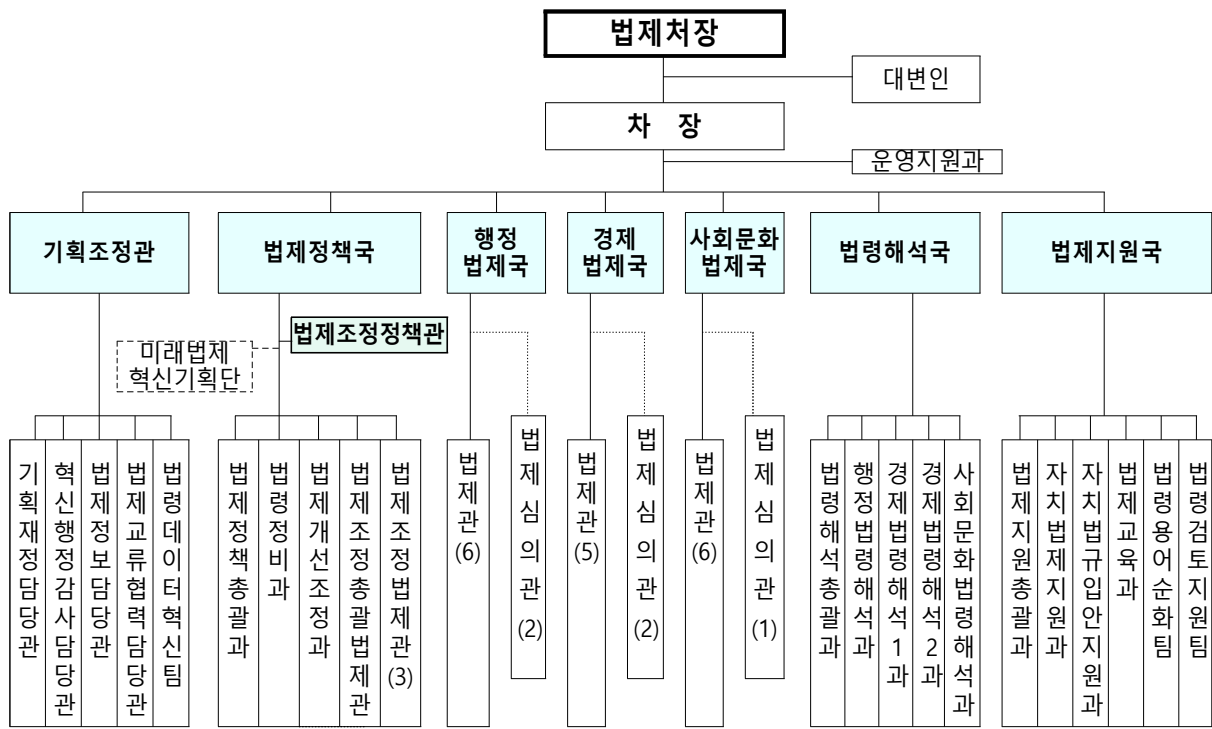
I. 개 관

1. 조직 및 정원

□ 2024년 8월 기준, 법제처는 1조정관, 6국, 1정책관, 5심의관, 21법제관, 18과(담당관), 3팀으로 구성되고 별도의 소속기관은 없으며, 정원은 총 241명이고 현원은 총 233명임.

【 법제처 조직도 】

(2024. 8. 1. 기준)



< 법제처 정원 및 현원 현황 >

(2024. 8. 1. 기준)

구 분	합계	정무직	특정직	별정직	일반직
정 원	241	1	-	-	240
현 원	233	1	-	-	232

자료: 법제처

2.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4	4	-	100.0%	-	-

□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4백만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음.

-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과년도 보수 환수 및 단체보험료 환급금 373만원과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 구매에 따른 징수액 17만원 등임.

【 2023년도 세입결산 세부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결산			2024예산
			징수결정액(A)	수납액(B)	B/A(%)	
건물대여료	11,121	-	-	-	-	-
변상금	35,552	-	-	-	-	-
가산금	26,678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0,121	289,064	3,727	3,727	100.0	-
잡수입	-	53	170	170	100.0	-
총 계	83,472	289,117	3,897	3,897	100.0	-

3.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세출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세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증.감 액				
43,728	43,728	-	-	±198	43,728	42,622	-	1,106

□ 2023회계연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437억 2,800만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5%인 426억 2,200만원이고, 전용액은 1억 9,8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5%인 11억 600만원임.

□ 지출액 426억 2,200만원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물건비가 376억 8,7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 중 8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인건비: 229억 500만원 (53.7%)
- 물건비: 147억 8,200만원 (34.7%)
- 이전지출: 38억 6,400만원 (9.1%)
- 자산취득: 10억 7,000만원 (2.5%)

□ 전용액은 1억 9,800만원이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이 이루어졌음.

- 신규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기타직보수 1억원
- 청년인턴 일용임금 6,500만원
- 교육훈련 대상자의 국외현장학습 국외교육여비 2,000만원
- 사업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용임금 900만원
- 국내여비 400만원

□ 불용액 11억 600만원을 살펴보면,

각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5억 900만원, 물건비 4억 9,700만원, 이전지출 7,0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이 각각 불용됨.

【 2023년도 법제처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37,291	40,670	43,728	43,728	42,622	97.5	45,418
1000 정부입법 총괄지원	37,291	40,670	43,728	43,728	42,622	97.5	45,418
1001 본부인건비	20,058	20,771	22,142	22,142	21,734	98.2	22,612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1001-100)	20,058	20,771	22,142	22,142	21,734	98.2	22,612
1011 본부기본경비	3,324	3,669	4,394	4,394	4,235	96.4	5,032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011-200)	1,424	1,525	1,732	1,732	1,665	96.1	1,755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1,900	2,144	2,662	2,662	2,570	96.5	3,277
1031 법제정보서비스	3,627	3,901	4,117	4,117	3,997	97.1	4,708
법령정보제공 (1031-300)	1,877	2,086	1,950	1,950	1,890	96.9	1,718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031-301)	736	795	1,116	1,116	1,085	97.2	1,662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서비스 (1031-302)	1,014	1,020	1,051	1,051	1,022	97.2	1,328
1032 정부입법 총괄 관리	1,914	2,224	2,418	2,418	2,249	93.0	2,406
법령심사지원 (1032-300)	337	367	381	381	354	92.9	335
법제정비 (1032-301)	1,300	1,427	1,307	1,307	1,211	92.7	1,324
행정법제 혁신 (1032-302)	277	430	730	730	684	93.7	747
1033 법제업무정보화지원	6,878	8,647	8,871	8,871	8,687	97.9	8,744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정보화) (1033-500)	6,878	8,647	8,871	8,871	8,687	97.9	8,744
1034 법제전문성향상	1,424	1,383	1,713	1,713	1,646	96.1	1,848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034-300)	1,184	1,121	1,470	1,470	1,412	96.1	1,555
외국법제기관교류 (1034-301)	240	262	243	243	234	96.3	293
1035 정책연구개발	68	74	74	74	74	100.0	68
법제정책연구개발 (R&D) (1035-300)	68	74	74	74	74	100.0	68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A)	2022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자 산	22,887	20,152	2,735	13.6 %
부 채	-	2	△2	△100.0 %
순자산	22,887	20,150	2,737	13.6 %

□ 2023회계연도말 자산은 228억 8,7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말 대비 27억 3,500만원이 증가함.

- 유동자산 중 선급비용은 100만원 집계되어 전기대비 큰 변동 없으며, 기타유동자산은 관사 임차 계약 만기가 2024년 중 도래 예정됨에 따라 임차보증금 5억원이 유동성 대체되어 유동자산은 전기대비 총 5억원 증가함
-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이 당기에 6,400만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기타의기타투자자산은 전기대비 4,800만원 증가함
- 일반유형자산 중 건물은 신규 취득 없이 감가상각으로 전기대비 1,200만원 감소하였고, 구축물은 대회의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 신규취득으로 인하여 2억 4,1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감가상각으로 인해 1억 3,000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1억 1,100만원 증가함.

기계장치는 향온향습기 구매 등 신규취득으로 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감가상각 등으로 2,400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총 2,600만원 증가함.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데스크톱 컴퓨터 구입 등 신규취득으로 인하여 1억 3,300만원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2억 900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총 7,600만원 감소함. 기타일반유형 자산은 업무용 방음실 부스 등 신규취득으로 5,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1,400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총 4,100만원 증가함

- 무형자산(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구입소프트웨어 및 기타무형자산)은 신규취득 등으로 인하여 36억 9,6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감가상각 등으로 10억 9,900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25억 9,700만원 증가함
- 기타비유동자산은 관사 임차 계약이 2024년 만기 도래 예정으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5억 원이 기타유동자산으로 계정 분류됨에 따라 전기대비 5억원 감소함

□ 2023회계연도말 부채는 전기 기타의미지급금 200만원이 당기에 지급됨에 따라 유동부채가 전기대비 200만원 감소함

□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말 순자산은 전년 대비 27억 3,700만원 이 증가한 228억 8,700만원임.

나. 재정운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A)	2022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I.프로그램순원가 ¹⁾	43,506	41,997	1,509	3.6 %
II.관리운영비 ²⁾	-	-	-	-
III.비배분비용 ³⁾	-	8	△8	△100 %
IV.비배분수익 ⁴⁾	58	31	27	87.1 %
V.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43,448	41,975	1,473	3.5 %
VI.비교환수익 등 ⁵⁾	-	-	-	-
VII.재정운영결과 (V - VI)	43,448	41,975	1,473	3.5 %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434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300만원이 증가함.

- 프로그램순원가 435억 600만원에서 지출반납금 등 비배분수익 5,8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재정운영순원가는 434억 4,800만원임.
- 한편, 2023회계연도에서는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대비 15억 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고유사업 예산 집행액 증가 등이 반영된 것임.

-
- 1) 프로그램총원가(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사업비용에 해당함.
 - 2)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의미함.
 - 3)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임. 비배분비용의 예로는 일반유형자산의 처분손실,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자금의 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4)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임. 비배분수익의 예로는 일반유형자산의 처분이익,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자금대여로 인한 이자수익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5)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함.

다. 순자산변동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A)	2022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I.기초순자산	20,150	18,319	1,831	10.0 %
II.재정운영결과	43,448	41,975	1,473	3.5 %
III.재원의조달및이전	46,186	43,806	2,380	5.4 %
IV.조정항목	△2	△1	△1	△100 %
V.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22,887	20,150	2,737	13.6 %

- 2023회계연도 말 기초순자산은 201억 5,0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434억 4,800만원이며,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및 기타재원 조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3억 8,000만원 증가한 461억 8,600만원임.
- 조정항목의 경우 자산재평가이익 200만원이 당해연도 감가상각과 상계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0만원 감소함.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을 합계한 금액인 기말순자산은 228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3,700만원이 증가함.

5.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검토내용

- 법제처는 2023년도에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혁신과 경제혁신”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다”는 전략목표 하에 “정부입법의 체계적 관리와 법제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정부정책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고 실용적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프로그램 목표를 수립하였음.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제처는 일반회계 13개의 세부사업을 통하여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법령안 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제지원, 국가법령정보 관리·제공, 법제교류·협력, 법령홍보 등을 추진하였음.

- 2023년도 법제처 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세출예산현액 437억 2,800만원 중 426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집행률은 97.5%임.

- 2023회계연도 법제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법제처는 신규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근무에 따라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110-02목)의 부족이 발생하여 보수(110-01목) 중 1억원을 자체 전용하였는데, 유사한 사유로 인한 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타직보수 예산의 연례적 과소편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기타직 보수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법제처는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에 따른 청년인턴 채용에 필요한 예산 6,500만원을 인건비 보수(110-01목)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일용임금(110-04목)으로 전용하였는데, 청년인턴 채용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셋째, 법제처는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로 운영 중인 단기 법률사무중사 프로그램의 2023년 변호사 채용률이 30%로 부진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법제처는 국내파견 교육훈련자의 국외 현장학습 진행을 위해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국외교육여비(220-03목)로 3차례에 걸쳐 2,014만원을 전용하였는데, 향후 집행 내용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 변경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섯째, 법제처는 법령해석 업무 관련 예산을 기관운영기본경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법령해석은 법제처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업무로 집행된 사업실적 및 예산의 비용효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여섯째, 법제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협의회를 통한 이견 조정 등의 성과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 본협의회 개최를 활성화하고, 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을 국무조정실에 통보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일곱째,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에서 소관 부처 의견조회 및 오류신고 게시판 등을 통해 오류를 점검하고 있는데 법령정보의 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한 콘텐츠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블로그기자단 운영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여덟째, 법제처는 법령심사지원 사업에서 정부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입법계획의 수정률이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홉째, 법제처는 알기쉬운 법제구축 사업으로 6개 유형의 문장정비를 추진 중인데, 문장구조를 정비하려는 시도로 인해 사실상 법령의 내용이 변경될 우려가 있고, 단순한 문장구조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입법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 예산의 효용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열 번째, 법제처는 행정법제 혁신 사업의 정책연구비로 3개 과제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일부 과제의 경우 입법영향분석보다 일반적인 정책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입법영향분석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연구용역보고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II. 결산 검토

1.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1001-100)

가. 결산 개요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는 법제처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수 등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 221억 4,200만원 중 6,500만원을 전용하고 예산현액 220억 7,700만원 중 217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4,300만원을 불용함.

【 2023년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비목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인건비	22,142	-	△65	-	22,077	21,734	-	343	22,612
- 보수 (110-01)	21,720	-	△165	-	21,555	21,273	-	283	22,144
- 기타직보수 (110-02)	251	-	100	-	351	329	-	22	292
- 연가보상비 (110-05)	170	-	-	-	170	132	-	39	176

자료: 법제처

- 2021회계연도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시 법제처는 연례적인 인건비 불용 발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법제처는 인력 수급 노력 및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등을 통해 2023년

에는 2022년 13억 3,800만원 대비 10억원 가량 불용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설명함.

【 최근 5년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19,680	19,680	±131	19,680	18,711	95.1	95.1	-	969
2020	22,199	21,412	-	21,412	19,892	92.9	92.9	-	1,520
2021	22,430	22,430	23 ±27	22,453	20,058	89.4	89.3	-	2,395
2022	22,142	22,109	±25	22,109	20,771	93.9	93.9	-	1,338
2023	22,142	22,142	△65 ±100	22,077	21,734	98.2	98.4	-	343

자료: 법제처

- 인건비 결산내역 중 전용 6,500만원은 국무조정실의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턴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건비의 보수(110-01목)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의 일용임금(110-04목)으로 전용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동일 세부사업 내에 기타직보수(110-02목)의 부족으로 보수(110-01목)에서 1억원의 전용증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나. 보수(110-01목)에서 기타직보수(110-02목)로 연례적 전용 부적정

- 2023년 기타직보수(110-02목)로 편성된 예산은 2억 5,100만원으로 전용 1억원을 포함한 총 3억 5,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불용함.
- 기타직보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 지급액이 정해진 기타 직종에 대한 보수인데, 2023년 법제처는 신규공무원이 정식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의 형태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기타직보수(110-02목)의 부족이 발생하여 보수(110-01목) 중 1억원을 자체 전용한 것으로 설명함.

【 2023년 기타직보수(110-02목) 세부 집행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직급	소속	집행금액
전문임기제	나급	법령용어순화팀	73,239
	다급	대변인실	59,245
	라급	대변인실	55,390
	라급	대변인실	49,110
경채	5급	법제지원총괄과	3,552
	5급	경제법령해석2과	3,552
한시임기제	5급	법령데이터혁신팀	752
실무수습 (지역인재)	7급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8,645
	7급	법령해석총괄과	22,546
	9급	행정법제국	13,722
실무수습 (공채)	7급	법제정보담당관실	19,827
	7급	자치법제지원과	19,895
합계			329,475

자료: 법제처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타직보수의 경우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 운용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당해 비목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신규공무원이 임용 전 근무함에 따라 기타직보수(110-02목)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110-01목)로부터의 자체전용이 가능함을 규정함.

- 법제처는 동 지침에 근거하여 보수(110-01목)에서 기타직보수(110-02목)로 1억원을 자체 전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 등과 같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기타직보수의 부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타직보수 예산의 과소편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매년 특정 비목을 부족하게 편성하고 부족한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부터 전용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 결과와 다르게 불필요한 예산 변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기타직보수 예산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19~2023년 인건비 내 기타직 보수(110-02)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내역
	본예산	추경					
2019	14	14	131	145	137	8	전문임기제 4명, 실무수습인원 1명
2020	268	268	-	268	237	31	전문임기제 4명, 실무수습인원 1명
2021	261	261	27	288	281	7	전문임기제 4명, 실무수습인원 4명
2022	235	235	25	260	254	6	전문임기제 5명, 실무수습인원 3명
2023	251	251	100	351	329	22	전문임기제 4명, 실무수습인원 7명

자료: 법제처

【 2019~2023년 인건비 내 기타직 보수(110-02)로의 전용 사유 】

연도	전용 금액	전용사유
2019	1억 3,100만원	전문임기제 임용 등에 따른 보수의 기타직보수로의 세목조정
2021	2,300만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관운영기본 경비(총액인건비대상) 특근매식비 일부를 인건비로 전용
	2,700만원	신규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근무에 따라 기타직보수 (110-02)의 부족이 발생하여 보수(110-01) 일부를 기타직보수 로 전용
2022	2,500만원	
2023	1억원	

자료: 법제처

2.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1011-200)

가. 결산 개요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00)는 법제처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중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서 2023년도 예산 17억 3,200만원 중 16억 6,5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732	1,732	-	65	1,797	1,665	-	132	1,755
상용임금	423	423	-	-	423	411	-	12	469
일용임금	95	95	-	65	160	76	-	84	46
특근매식비	217	217	-	-	217	205	-	11	220
일·숙직비	26	26	-	-	26	24	-	2	26
복리후생비	279	279	-	-	279	263	-	16	285
기타운영비	165	165	-	-	165	158	-	7	164
직책수행경비	416	416	-	-	416	416	-	-	427
특정업무경비	10	10	-	-	10	10	-	-	10
고용부담금	102	102	-	-	102	102	-	-	108

자료: 법제처

- 2022년 결산 시 법제처는 기관운영기본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공무원 근로자 임금과 관련하여 호봉체계 개편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받았고, 법제처는 기존 1만 원이던 최저호

봉과 최고호봉의 기본급 격차를 1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장기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한 것으로 설명함. 법제처는 2025년에도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공무원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힘.

나. 청년인턴 채용에 따른 인건비 예산 전용 부적정

- 정부는 청년들의 정부정책 참여 등 다양한 일 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23. 1. 17. 국무조정실을 통해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을 발표⁶⁾함.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외에 중앙행정기관에서도 2023년부터 신규로 청년인턴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법제처는 이에 따라 2023. 3월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4명의 인턴을 6개월간 채용하기로 결정함.

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청년의 국정참여 및 일경험 기회 확대 위해 국내외 청년인턴 대폭 늘리기로”, 2023. 1. 17.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에 따른 2023년 공공부문의 인턴 채용 및 지원규모는 2022년 2.2만명에서 1.3만명 이상 확대된 3.5만명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23년 부처의 기능과 규모를 고려하여 2천명을 선발하기로 함.

* 중앙 2천명(신규) + 공공기관 2.1만명(확대) + 재정사업 7.7천명(신규) + 해외 인턴 4.5천명

【 2023년도 법제처 청년인턴 운영계획 중 모집인원(안) 】

부서명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행정법제혁신 추진단	행정·홍보	1명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연 나이 법령정비 국민 의견수렴 지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회의 개최준비 등 업무지원
법령데이터 혁신팀	전산	1명	○법제 데이터분석 지원 ○법제분야 관련 국내외 우수 분석사례 정리 ○법제데이터 관련 회의 운영 지원
법령정비과	법무	1명	○법령 개선제안 검토 ○위법·불합리한 법령 정비과제 검토 ○어린이·청소년 대상 법제 및 진로교육 지원
알기쉬운 법령팀	외국어·국제	1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해외자료 조사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국민참여단 운영관리 지원(인터넷 카페 등 플랫폼 모니터링 등)

자료: 법제처

□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 이후인 2023. 1월 발표되었고, 2023년 청년인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전 부처에서 기관별로 자체 예산을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법제처는 4명의 인턴을 6개월간 채용하기 위한 예산 6,500만원을 인건비(1001-100)-보수(110-01목)에서 일용임금(110-04목)으로 2023. 6월 전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예산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국가재정법」 제45조⁷⁾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 예산

7)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46조⁸⁾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청년인턴 운영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의 발표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법제처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보수(110-01목)에서 일용임금(110-04목)으로의 전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 자체전용이 가능한 것⁹⁾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동 지침은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인 일용임금의 경우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야 함을 규정¹⁰⁾하고 있고, 동 일용임금은 변호사 단기 법률 사

8)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9) 2023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비목별 전용권 위임현황, p.236)

구 분	목	자체전용대상	자체전용제외(기획재정부 협의)
100 (인건비)	110 (인건비)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타 비목에서 110-02목(기타직보수), 110-03목(상용임금), 110-05목(연가보상비)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10) (2) 일용임금
가) 집행기준

무종사 인원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¹¹⁾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110-01목)를 일용임금(110-04목)으로 전용하여 청년인턴 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법제처는 당초 행정·홍보, 전산, 법무, 외국어·국제 4개 분야 각 1명의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법무 분야 1명을 제외하고는 지원자가 없어 2차 채용공고에서는 법제 지원 분야로 한정하여 추가 3명의 인턴을 모집하였고, 이후 4개월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전용한 예산 6,500만원 중 75%에 해당하는 4,900만원만 집행하였는데 법제처는 청년인턴 운영을 위한 비용을 전용한 6월 당시에는 11월까지 운영 예정인 변호사 단기 법률 사무종사 운영을 위한 일용임금 9,500만원의 불용여부 및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일용임금(110-04목)은 당초 전용한 금액 6,500만원보다 더 큰 8,400만원이 불용된 바 이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나 수요조사 없이 추진한 데에서 불필요한 예산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음.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일용임금을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야 한다.

11) 법제처,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명세서(일반회계)」, 34p

(110-04) 일용임금 95,000원(천원)

가. 변호사 단기법률 사무종사 2,250,000*7인*6월 = 94,500

나. 조정계수 500,000원

【 2023년 청년인턴 채용기간 및 관련 예산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직급	소속	집행금액	비고
청년인턴	인턴	법령정비과	13,428	6~12월
	인턴	행정법제혁신추진단	11,858	8~12월
	인턴	법제지원총괄과	11,858	8~12월
	인턴	자치법규입안지원과	11,858	8~12월
합계			49,002	

자료: 법제처

다. 법률사무종사 제도 운영의 효율성 검토 필요

- 기관운영기본경비 일용임금(110-04)은 수개월 동안 고용하는 일용직을 위한 보수로, 법제처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¹²⁾를 6개월 임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 이를 위해 2023년도 예산에는 1억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3,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 법률사무종사 예산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결산액
일용임금	보수	95,000	27,000
고용부담금	4대 보험료	11,634	3,123
합 계		106,634	30,123

자료: 법제처

12) 법률사무소 개업을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법」에 따라 6개월의 최소 법률사무종사가 요구되는 변호사

□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국가기관 등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마쳐야만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음.¹³⁾

이러한 법률사무종사 제도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법조인으로서의 함양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 법제처는 2012년 신청을 통하여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음.¹⁴⁾

13)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14) 「변호사법 시행령」 제2조(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①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인적사항
2. 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

법제처의 최근 5년간 법률사무종사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채용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3년을 제외하면 평균 근무기간이 계획된 6개월에 미치지 못함. 특히 2023년의 경우 모집 계획인원은 7명이었으나 최종 2명이 채용되어 채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최근 5년간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운영현황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모집공고인원	5명	5명	7명	7명	7명
실제근무인원	5명	5명	5명	7명	2명
평균근무기간	5개월 12일	5개월 8일	5개월	4개월 26일	6개월
배치부서	법제교육과 법령해석국(2)법 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과 법제관실	법제교육과 법령해석총괄과(2) 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 법제관실	법제교육과 자치법규입안 지원과 법령정비과 법제조정법제관실 법령해석총괄과	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 법제관실 법령해석총괄과 법제교육과 자치법규입안 지원과 행정규칙법제관실 법령해석총괄과	법제교육과 법령해석총괄과

자료: 법제처

3.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라 한다)를 위한 별도의 수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개요
- ②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정신청기관을 법 제2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1명 이상이 재직할 것. 이 경우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 중에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의 재직 기간은 합산한다.
 2.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의 수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 이상일 것
 3.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또는 일반 법률 사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을 것
 4.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1명 이상 지정되어 있을 것
 5. 사무실 공간 등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할 것
- ③ ~ ⑥ 생략

또한, 최근 3년간 법률사무종사 예산의 집행률은 2021년 약 60%, 2022년 약 75%, 2023년 약 30%로, 3년 연속 부진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법률사무종사 예산 집행내역 】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¹⁵⁾	2022년	2023년
예산 (천원)	일용 임금	52,355	53,859	105,000	105,000	95,000
	고용 부담금	5,445	5,682	11,403	11,529	11,634
집행 (천원)	일용 임금	47,759	47,199	62,280	76,490	27,000
	고용 부담금	4,607	5,216	6,801	8,968	3,123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비수도권이라는 법제처의 위치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원자의 수가 부족하고, 합격한 자가 타 기관에도 합격한 경우 법제처와의 계약 전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모집 계획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자들이 반복적으로

15) 법제처의 설명에 따르면,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일용임금 예산은 2020년까지 시급(최저임금)으로 산출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실무수습 변호사의 급여와 관련된 논란이 다수 발생했던 점 및 각 기관의 우수인력 확보 등을 고려한 법무부 안내(법무과-5004, 2020.6.9., “2021년 국가기관·지자체 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관련 안내”)에 따라 1인당 250만원으로 일괄하여 일용임금 예산에 반영되었음.

2020년·2021년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예산(자료: 법제처)

년도	일용임금	고용부담금	합계
2020년	8,590원x209시간x5인x6월=53,859천원	53,859천원x0.1055=5,682천원	59,541천원
2021년	2,500,000원x7인x6월=105,000천원	105,000천원x0.1086=11,403천원	116,403천원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계획된 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법제처의 인력 활용에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법제처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인력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임.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요가 높지 않고 법제처 입장에서조차 인력 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제처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계속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채용하는 사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법제사법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법제처는 해당 사업의 집행 부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매년 각 부서의 수요를 파악한 후 모집 계획인원을 설정하고, 법률사무종사 모집공고를 법률신문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수회 시행하며,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들의 법제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부서별 총괄서기관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상호 간 지식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월별 소통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법제처 단기 법률사무종사 교육 프로그램 내용 】

- (오리엔테이션 실시) 법제처 업무 전반 및 조직, 부서별 위치 소개 및 재직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 (멘토링 운영)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들의 법제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부서별 총괄 서기관 등을 1:1 멘토로 지정·운영(상시)
- (소통 프로그램 등 운영)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상호간 지식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위한 월별 소통 프로그램(월간 커피브레이크) 실시
- 변호사 출신 멘토 사무관 섭외하여 멘토링 실시
- (업무 체험 프로그램) 법령해석 안건 합동검토회의(매주 월) 참관 및 법제 교육 출강* 등 주요 업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법제 교육과 주관 교육 과정('행정법일반과정' 등) 107시간 강의 진행
- (교육 프로그램) 법령입안과정, 법령해석과정 등 법제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법제교육과 주관 과정) 운영

구분	교육 과정
법령입안 심화과정	- 행정기본법 - 총칙, 보칙 및 부칙 규정 - 실체 규정 1 (인허가, 등록, 신고) - 실체 규정 2 (결격사유, 과징금) - 실체 규정 3 (행정강제, 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및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
법령해석과정	- 행정법 I (총칙) - 적극행정 법제 사례 연구 - 행정법 II (작용법) - 법령해석 방법론 -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 모의해석실습
법제 전문가 과정	- 법제 특강(경과조치와 적용례의 구분과 작성방법) - 제안이유 주요내용 작성법 - 법령문장 잘 쓰는 방법 - 법제특강(부칙 입안시 유의사항 -해석상 부칙이 문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 법령심사안 작성시 유의사항

자료: 법제처

그러나 2021년 이후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모집인원 재공고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집행 실적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도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음.

게다가 법제처에 채용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법제처로부터 임금을 제공받는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단기로 근무하는데, 이들에 대한 채용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교육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다만,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신규 변호사의 능력 함양을 위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¹⁶⁾가 있고, 멘토링 등 교육 프로그램이 제도 운영 목적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설명함.

- 따라서 채용인원의 감소 및 예산집행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제처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해당 제도의 운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6) 법률사무종사제도 취지에 따라 법률사무종사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제 사건을 통한 실습 진행 등 적합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법률사무종사 가이드라인 p25)

3.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가. 결산 개요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는 법제처 기관운영 및 일반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2023년도 예산은 총 26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3,600만원은 동일한 사업 내에서 세목조정되었고, 25억 7,000만원이 집행되어 9,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기관운영기본경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기본경비	2,662	2,662	-	±36	2,662	2,570	-	92	3,277
일반수용비	1,381	1,381	-	△20	1,360	1,354	-	7	1,527
공공요금및제세	72	72	-	-	72	53	-	19	85
피복비	0.7	0.7	-	-	0.7	0.6	-	-	-
급식비	4	4	-	-	4	3	-	1	3
임차료	211	211	-	△7	204	176	-	28	250
유류비	23	23	-	-	23	9	-	15	15
시설장비유지비	68	68	-	-	68	68	-	-	94
일반용역비	75	75	-	3	78	64	-	14	111
국내여비	142	142	-	13	155	151	-	4	186
국외업무여비	24	24	-	△9	15	14	-	1	16
국외교육여비	-	-	-	20	20	20	-	-	-
관서업무추진비	142	142	-	-	142	142	-	-	149
손실보상금	0.05	0.05	-	-	0.05	-	-	0.05	-
포상금	0.05	0.05	-	-	0.05	-	-	0.05	0.1
공사비	251	251	-	-	251	251	-	-	75
자산취득비	269	269	-	-	269	265	-	3	315
무형자산	-	-	-	-	-	-	-	-	450

자료 : 법제처

나. 국내장기교육 훈련자 국외교육여비 적정 편성 필요

- 법제처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국외교육여비(220-03목)로 3차례에 걸쳐 2,014만원을 전용하였음. 법제처는 국내파견 교육훈련자의 국외 현장학습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교육훈련비 중 일부를 국외교육여비로 비목을 변경한 것으로 사유를 설명함.

【 2023년 일반수용비 → 국외교육여비 전용 내역 】

구분 (날짜)	~에서		금액(원)	~으로		집행내역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5.24.)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일반수용비 (210-01)	8,647,310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국외교육여비 (220-03)	글로벌리더십 과정 국외현장학습 경비
전용 (23.8.8.)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일반수용비 (210-01)	7,453,680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국외교육여비 (220-03)	고위정책과정 국외정책연수 경비
전용 (23.9.12.)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일반수용비 (210-01)	4,039,740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국외교육여비 (220-03)	안보과정 국외현장학습 여비
합계			20,140,730			

자료: 법제처

- 그러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장기교육의 경우 모집 시점에 대략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가 교육계획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외현장학습 경비를 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등을 위한 예산비목인 국외교육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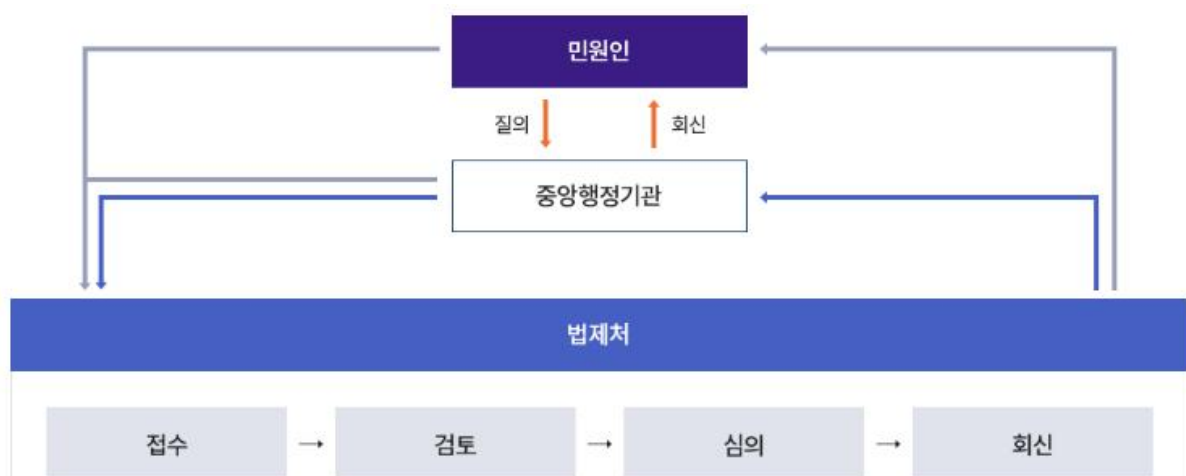
(220-03목)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 후
수시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 변경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법제처는 매년 국내장기교육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와 국외교육여비
를 함께 예산 요구안에 반영하여 예산당국에 요청하고 있으나 국외
교육여비는 편성되지 않아 매번 일반수용비 일부를 국외교육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안은 집
행 내용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관점
에서 국외현장학습의 경우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국외교육여비로
계상되어 다른 국외여비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법령해석국 관련 별도 사업예산 편성 방안 검토 필요

- 법령해석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말함. 법령해석 업무는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및 법령정비와 함께 법제처의 주요 기능에 해당함.
- 법령해석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을 받았으나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③ 민원인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접수되어 법제처의 안건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신하는 절차로 진행됨.

【 법제처 법령해석 업무 절차 】



- 2023년 법제처는 1,182건 법령해석 요청을 접수하여, 490건 회신하였음. 접수건수는 2021년 923건에서 2023년 1,182건으로 28% 증가한 반면, 처리건수 중 반려건수는 2021년 193건에서 2023년 391건으로 102% 증가¹⁷⁾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3년간 법령해석 접수 및 처리 건수 현황 】

(2023. 12. 기준)

연 도		2021	2022	2023
접 수		923건	1,013건	1,182건
철 회		58건	91건	139건
처 리	회 신	470건	470건	490건
	협 의·조 정	122건	156건	169건
	반 려	193건	272건	391건
평균처리기간 ¹⁸⁾		37.9일	36.7일	39.9일

자료: 법제처

- 또한, 법제처는 법령해석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2023년 검토과정에서 39건의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였으며, 44회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대면 23회, 온라인 21회)를 개최하였음.

17) 법령해석 요청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원인이 될 수 있는데, 민원인 요청 안건 접수가 2021년 518건, 2022년 604건, 2023년 696건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 안건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민원인 접수 안건의 경우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이나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여부에 관한 사항 등 법령해석 반려사유(「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반려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설명됨(출처: 법제처)

18) 법제처는 법령 소관 부처 협의 및 민원인 답변 지연 등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상 계류된 안건을 장기계류 안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24년 6월말 기준 17건이 장기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함.

【 최근 3년간 법령해석 접수 및 처리 건수 현황 】

(2023. 12. 기준)

연 도	2021			2022			2023		
개최방식	대면	온라인	서면	대면	온라인	서면	대면	온라인	서면
본위원회	-	42회	-	3회	39회	-	23회	21회	-
전문위원회	-	-	-	-	2회	-	-	9회	-
소위원회	33회	-	-	21회	-	-	29회	-	-

자료: 법제처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게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10만원(2시간 이상 참석하는 경우 5만원 추가), 사전검토수당 15만원, 주심수당 10만원(주심안건 1건당으로 초과 안건마다 5만원 추가 등)을 지급하고 있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평균 4시간이 소요되고, 참석위원은 1~2개의 안건마다 주심위원¹⁹⁾으로 지정되어 참석하고 있는 바, 참석수당, 사전검토수당, 주심수당을 합하여 35만원~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²⁰⁾.
- 이처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상·하반기 법령해석사례집 발간 등 법령해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예산은 전체 기관운영기본경비 24억 6,000만원 중 12.2%에

19)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참석위원들이 상정되는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위원별로 주심안건을 배정함으로써 주심위원이 해당 주심안건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검토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함.

20) 그 외에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외부위원에 대해 교통비를 3만~1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

해당하는 3억 100만원 가량으로 파악됨.

【 2023년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법령해석국 관련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비목	내역	예산액	집행액
일반수용비 (210-01목)	① 국 일반수용비	26,271	23,977
	②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125,000	125,075
	③ 참석위원 교통비	5,250	587
	④ 안건인쇄비	76,626	76,622
	⑤ 법령해석사례집 발간	24,000	23,727
	⑥ 법령해석담당자 연찬회	6,000	5,235
	⑦ 전문가 자문	9,000	8,750
	⑧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1,000	1,000
	⑨ 법령의견제시과 일반수용비	7,700	7,700
	⑩ 전문위원회 운영비	8,400	7,500
	⑪ 참고문헌 구입비	8,000	4,160
공공요금및제세 (210-02목)	① 공공요금	6,000	-
	② 안건, 답변서등 발송	4,470	-
임차료 (210-07목)	① 위원회 개최(서울)	5,040	7,996
	② 공기청정기 임차료	3,360	3,494
국내여비 (210-01목)	① 국내여비	5,330	5,330
	② 안건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800	800
	③ 위원회 개최(서울)	30,000	17,815
	④ 법령의견제시과 국내여비	1,368	857
국외업무여비 (210-02목)	외국법령해석시스템 연구	7,981	6,987
업무추진비 (240-02목)	① 국 관서업무경비	1,818	732
	② 위원회 개최 경비	10,800	10,859
	③ 담당자 연찬회 경비	2,550	1,818
	④ 법령의견제시과 경비	2,250	1,660
계		368,225	342,681
(음영부분 법령해석 업무 관련 예산 계)		(301,658)	(294,771)

* 기관운영경비의 공공요금및제세(210-02)는 운영지원과에서 일괄 지출하여 법령해석국 관련 집행액 산출 불가

□ 그런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본경비로 편성한 예산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말함²¹⁾. 또한, 기본경비는 집행지침에 따라 기본경비 총액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등 예산의 집행에 있어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특수성이 있음.

□ 그러나 법령해석은 법제처의 입안지원, 법령심사 및 법령정비와 함께 법제처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업무임. 이에 필요한 예산은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기관운영기본경비와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음.

□ 법제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기본경비로 추진하던 사업을 주요 사업비로 전환·요구하는 것을 금지²²⁾하고 있으므로 매년 기본경비로 편성하던 법령해석국 기본경비를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법령해석 업무 관련 예산을 현재와 같이 기관운영기본경비에 포함

21)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8.

「국가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군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서 정의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여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경비임

22)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4

하여 편성하는 경우 법령해석 업무와 직접 관련된 예산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결과 집행된 예산과 법령해석 처리·철회·반려 현황,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내역 등 사업 실적과의 관계, 예산의 비용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여지²³⁾도 있음.

- 참고로, 법령심사지원 사업과 법령입법지원 사업의 경우 법령심사지원 세부사업 내의 내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부입법 제때마련율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 삼아 성과달성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그 외 정부입법 법률안의 국회 제출 건수,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개최 건수 등의 사업 추진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바, 법령해석업무 관련 비용 역시 별도 사업예산으로 요구·편성하여 사업 실적 및 성과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3) 법제처는 법령해석 처리·철회·반려 현황,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내역 등 법령해석 실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국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실적을 제출하고 있는바, 예산과 사업실적과의 관계, 예산의 비용효율성은 법령해석국 기본경비 집행실적으로도 파악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법령심사지원 및 법령입법지원 내역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

내역 사업명	편성 근거	집행 내역
법령심사 지원	○ 96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14.4백만원(180건×0.08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5백만원(830부×0.018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4백만원(500부×0.004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34.4백만원(12월×2.87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28.1백만원(12월×2.34백만원)	○ 87.4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10.2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4.9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2.8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34.2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25.3백만원
법령입법 지원	○ 216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118백만원(3명×39.3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9.5백만원(850부×0.023백만원) · 전문가 간담회: 7.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결과보고서 발간: 3.6백만원(12,000원×300부×1회)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20.4백만원(34회×0.6백만원) · 국외출장: 8.7백만원(1회×8.7백만원) · 사무용품비: 6.2백만원 · 기타 사업추진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32.5백만원	○ 204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113.8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9.5백만원 · 전문가 간담회: 3.8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결과보고서 발간: 3.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18.8백만원 · 국외출장: 5.7백만원 · 사무용품비: 6.2백만원 · 기타 사업추진비 등: 32.6백만원

자료: 법제처

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운영 강화방안 모색 필요

□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간 이견 해소를 위하여 법제처장이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때 그 사실 및 법리적 보완 사항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제11조의3제1항 및 제5항), 이견 조정을 위해 직권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제12조의2제5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제처장이 국무조정실 등 관련 조정기관에 통보(제11조의4제2항)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²⁴⁾

□ 최근 3년간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는 2021년도 96건, 2022년도 72건, 2023년도 107건의 안건에 대하여

2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④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파악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제11조의4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 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입법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최된 것으로 확인됨. 2023년의 경우 협의회를 통해 이견 조정이 88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정의 경우 ‘일부 조정’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조정을 통해 입법을 완료한 안건은 27건으로 파악되고 있음.

【 최근 5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내역 】

(2023. 12. 기준)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안건수	64 (본협의회0건)	97 (본협의회0건)	96 (본협의회1건)	72 (본협의회1건)	107 (본협의회5건)
조정건수	49	88	78	62	88
조정건수 중 입법완료건수	17	15	19	16	27
동일 안건(의안번호)을 1건으로 하여 계산한 개최건수	59	92	89	63	45

※ ‘조정’은 ‘일부조정’을 포함하며, 동일 안건에 대하여 조정이 한 번에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안을 달리하여 상정한 경우를 별도 건으로 포함함

자료: 법제처

- 의원발의 법률안이 매년 6,000~7,000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²⁵⁾에서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심사하는 중 타 부처간 이견이 뒤늦게 확인되거나 제시되는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는 등 입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이를 고려하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

25)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원발의 법률안은 2019년 6,039건, 2020년 7,119건, 2021년 6,759건, 2022년 4,703건, 2023년 6,405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됨.

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현재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과 법률안 소관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본 협의회(「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제3항)와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제6항)로 구분²⁶⁾할 수 있는데, 개최건수 중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본협의회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개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실무협의회 개최만으로 부처간 이견 조정이 되는 경우가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나, 동일 안건에 대해 수차례 협의회를 개최²⁷⁾하여도 이견 조정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조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는 고위공무원이 직접 협의회에서 의견을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협의회 개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6)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제11조의4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4에서 같다)

2.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⑥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7) 예컨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차례 개최되었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 경우 2023년에만 10차례 개최된 것으로 확인됨.

□ 다음, 「법제업무운영규정」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²⁸⁾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처는 정책적 이견 등으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어려운 법안에 대해서는 정책 조정을 소관하는 국무조정실 등의 조정을 거치도록 실무적으로 안내하고 있을 뿐 법제처장이 국무조정실에 이를 통보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법령안 자체의 문제가 아닌 각 부처 소관 영역 등으로 인한 부처 갈등인 경우 국무조정실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신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책 이견 등으로 인한 부처 이견 사안으로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한 국무조정실 통보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28) 제11조의4(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10. 10., 2014. 11. 19.>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가. 결산개요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는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 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 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임.
-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에 총 10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0억 2,200만원이 집행되고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051	1,051	-	-	1,051	1,022	-	29	1,328
상용임금	29	29	-	-	29	28	-	1	29
일반수용비	16	16	-	-	16	16	-	-	17
공공요금 및 제세	5	5	-	-	5	4	-	1	5
특근매식비	4	4	-	-	4	4	-	-	-
임차료	6	6	-	-	6	5	-	1	6
복리후생비	1	1	-	-	1	1	-	-	1
국내여비	1	1	-	-	1	1	-	-	1
사업추진비	10	10	-	-	10	10	-	-	10
민간위탁사업비	974	974	-	-	974	948	-	26	1,253
고용부담금	5	5	-	-	5	5	-	-	6

자료: 법제처

나. 콘텐츠 현행성 점검 방안 마련 필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법령정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임.

□ 관련 법령 일부분이 개정되었는데 해당 내용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함께 제공되는 연관 법령정보 또한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변경된 법령정보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해당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법령정보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신규 제작 시 각 소관 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현행성 및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인용 법령의 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류 신고 게시판 및 유선 등을 통해 상시 오류 신고를 받아 검토 후 즉시 반영하고 있음.

또한, 법제처로 직접 소관 부처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e-mail 등을 통해 한국법령정보원으로 공유하고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의 제·개정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두 달에 한 번 실시하는 모니터링과 오류 신고 접수만으로는 법령정보의 현행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임.

- 또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제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미 제·개정이 완료되어 시행이 예정되어있는 중요 생활법령의 경우 이를 사전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지난 2023년 7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등이 개정됨으로써 정비된 출생통보제²⁹⁾가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으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이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 전이라도 시행 예정 조문에 대한 안내문구 등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과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9)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다. 블로그기자단 운영의 실효성 검토 필요

-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사업을 한국법령정보원에 위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카드뉴스, 웹툰, Q & A, 동영상 등의 형식으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법령정보원은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동일한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여 독자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업비 상세내역 】

구분	금액
민간위탁사업비	974백만원
- 국문콘텐츠 개발 위탁	721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 위탁	70백만원
- 외국어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용역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홍보	42백만원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2008년부터 매년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하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에 게재되는 기사 및 콘텐츠를 제작하고, 법제처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련 행사에 참여하며, 페이스북 등 SNS 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블로그 기자가 기사 및 콘텐츠를 제출하면, 법제처는 원고료를 지급하고(일반기사 1건당 5만원, 기획기사 1건당 7만원), 한국법령정보원

은 매월 1건 이상 기사를 등록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우수활동 기사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음.

기자단은 직접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여 일반기사를 작성하거나, 외부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법제처가 제시한 특정 주제에 대하여 기획 기사를 작성함.

【 블로그 기자단 예산 집행내역 】

번호	집행 내역	지급 금액	지급일
1	2023년 1월 원고료 지급	600,000원	2023-02-23
2	2023년 2월 원고료 지급	550,000원	2023-03-23
3	2023년 3월 원고료 지급	850,000원	2023-04-17
4	2023년 4월 원고료 지급	500,000원	2023-06-05
5	2023년 5월 원고료 지급	550,000원	2023-06-09
6	2023년 6월 원고료 지급	550,000원	2023-07-20
7	2023년 7월 원고료 지급	740,000원	2023-08-16
8	2023년 8월 원고료 지급	500,000원	2023-09-08
9	2023년 9월 원고료 지급	500,000원	2023-10-18
10	2023년 10월 원고료 지급	440,000원	2023-11-13
11	2023년 11월 원고료 지급	560,000원	2023-12-11
12	2023년 12월 원고료 지급	770,000원	2023-12-11

자료: 법제처

【 일반기사 및 기획기사 비교 】

구분	일반기사	기획기사
주제	기자단 직접 선정	제시된 주제로 작성
형식	제한 없음(줄글, 카드뉴스 등)	
원고료	50,000원	70,000원
2023년 제작 건수	116건	18건
작성 예시		



자료: 법제처

- 블로그 기자단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되어 있는 콘텐츠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의 내용을 구성 및 디자인하여 제작한 콘텐츠를 법제처에 제출하고,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의 기자단 이야기 게시판에 이를 게재하고 있음.
 - 블로그 기자단 활동의 효용성은 그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의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바, 2023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118,885명으로 2019년에 비해 200% 이상 증가하였으나, 2023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의 방문자 수는 54,041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45% 증가하였고, 2021년·2022년 방문자 수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였음.
- 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의 증가율 대비 블로그의 방문자 수는 답보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블로그 방문자 수 현황 】

(단위: 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홈페이지 방문자	42,263	53,330	70,917	105,608	118,885
블로그 방문자	37,844	46,958	55,115	55,845	54,041

자료: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는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솔로몬의 재판, 웹툰 등의 형태로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를 포괄하고, 블로그에 있는 정보는 대부분 링크연결의 방식으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일반 국민은 본인이 찾고자 하는 생활법령 정보를 찾기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접근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정보가 편집 및 디자인만 다르게 소개되어 있는 블로그에 방문할 별도 유인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콘텐츠 예시 】

홈페이지 간접채용 생활법령정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로그인 최근 방문한 정보 언어 핵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설문문의 재판 웹툰 소식 참여 서비스 소개 주 홈 > 설문문의 재판 > 설문문의 재판 설문문의 재판 [중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 임차인 원두콩씨는 카페를 개업하면서 카페 옆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 토지의 구역에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었는데,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2년 후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원두콩씨는 종전 큰 곳으로 카페를 옮기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창한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넣었던 "계약만료 시 망을 원상 복구 할 것"을 근거로 원두콩씨에게 임차인 토지의 가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원두콩씨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 「민감」 제13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원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① 임대인: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경우에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콩씨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만료 시 망을 원상 복구 할 것"이라고 특약사항까지 넣었습니까? 가건물을 철거해야 해요! ② 원두콩씨: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토지에 가건물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임차인 대상을 몰랐습니다. 원상 복구'라고만 약했었을, 가건물은 명시하지 않았으니,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였던 복구하면 특약사항에도 미치지 못 하니까요! 제가 설치하지도 않은 가건물까지 철거하나니, 이 건 안돼요!! 당신의 선택은?	블로그 생활법령 이벤트 [공지] [솔로몬의 재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7/15) 생활법령 2024. 7. 1. 15:49 나눔 공유 +이웃추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OX퀴즈 이벤트 ⚠ 솔로몬의 재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 가건물도 철거해서 원상 복구 가건물 Café 전달주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 당시 이미 있던 가건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방문하고 퀴즈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이벤트 기간 2024.7.1. ~ 7.15. 임차인 원두콩씨는 카페를 개업하면서 카페 옆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 토지의 구역에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었는데,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2년 후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원두콩씨는 좀 더 큰 곳으로 카페를 옮기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차장 토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알렸는데도, 임대인은 토지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넣었던 "계약만료 시 망을 원상 복구 할 것"을 근거로 원두콩씨에게 임차인 토지의 가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원두콩씨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국적 선택 기간</th></tr> </thead> <tbody> <tr> <td>병역준비役に 편입된 사람</td><td>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td></tr> <tr> <td>✓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고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td><td rowspan="2">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td></tr> <tr> <td>✓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td></tr> <tr> <td>✓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td><td rowspan="2">22세가 되기 전까지</td></tr> <tr> <td>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td></tr> <tr> <td>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td><td>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td></tr> </tbody> </table> www.easylaw.go.kr	구분	국적 선택 기간	병역준비役に 편입된 사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고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국적 선택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국적 선택 기간</th></tr> </thead> <tbody> <tr> <td>병역준비役に 편입된 사람</td><td>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td></tr> <tr> <td>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고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td><td rowspan="2">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td></tr> <tr> <td>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td></tr> <tr> <td>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td><td rowspan="2">※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구분일 이전에도 할 수 있음</td></tr> <tr> <td>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td></tr> <tr> <td>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td><td>22세가 되기 전까지</td></tr> <tr> <td></td><td>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td></tr> </tbody> </table> 「국적법」 제12조제2항·제1항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www.easylaw.go.kr	구분	국적 선택 기간	병역준비役に 편입된 사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고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구분일 이전에도 할 수 있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22세가 되기 전까지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구분	국적 선택 기간																										
병역준비役に 편입된 사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고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구분	국적 선택 기간																										
병역준비役に 편입된 사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고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구분일 이전에도 할 수 있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22세가 되기 전까지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가 현재 운영 방식을 유지한다면 블로그의 방문자 수는 계속해서 답보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됨.

- 지난 2021년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처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채널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제처의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및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홍보를 위하여 해당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법제처는 이미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법령정보제공 등 법제처 관련 업무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로그 기자단 운영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을 고려할 때 블로그 기자단을 계속 운영할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법령심사지원(1032-300)

가. 결산 개요

- 법령심사지원(1032-300)은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내역사업이 있음.
 - (법령심사지원)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공포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 (법령입법지원)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안을 입안할 때부터 정책을 조문화하고, 법리적 쟁점 검토·지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법제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제업무평가 실시를 통한 일선기관의 법제업무역량 강화 지원
-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에 총 3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3억 5,400만원이 집행되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법령심사지원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령심사지원	381	381	-	-	381	354	-	27	335
법령심사지원	96	96	-	-	96	87	-	9	111
법령입법지원	216	216	-	-	216	204	-	12	170
법제업무 역량강화	68	68	-	-	68	62	-	6	54

자료: 법제처

나.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 강화 필요

- 내역사업인 법령심사지원 사업을 통해 작성하는 정부입법계획³⁰⁾은 그 해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대해 정부전체차원에서 입법추진의 우선순위 및 시기 등을 조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임.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매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처입법계획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하고, 법제처장은 이를 종합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수립된 정부입법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국회에 통지됨.

【 정부입법계획 수립 절차 】



자료: 법제처

- 정부입법계획은 입법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입법과정의 효율성과 법안심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나, 최근 5년간 당초 제출한 정부입법계획 대비 계획의 수정률

30) 법령심사지원 2023년도 집행내역(총 8,730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1,020만원, 법제업무편람 인쇄 1,490만원, 정부입법계획 인쇄 270만원, 법령심사지원 활동사업추진비 3,400만원,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2,550만원

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최근 5년 정부입법계획 추진 현황 】

연도 \ 구분	당초 제출 계획 [A]	당초계획 중 국회제출 [B]	당초계획 대비 제출비율 [C]	입법 계획 추가 [D]	입법 계획 철회 [E]	수정률 [$\frac{(B+C)}{A}$]	수정 입법 계획 [F]	수정계획 중 국회제출 [G]	수정계획 대비 제출비율 [H/I]
2019년	214건	117건	54.7%	95건	105건	93.4%	204건	204건	100%
2020년	380건	275건	72.4%	52건	120건	45.3% ³¹⁾	312건	312건	100%
2021년	210건	102건	48.6%	60건	121건	86.2%	149건	149건	100%
2022년	165건	76건	46.1%	85건	107건	116.4%	143건	143건	100%
2023년	210건	110건	52.4%	119건	109건	108.5%	220건	220건	100%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2022년의 경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등 반영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전에 수립했던 정부입법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³²⁾, 2023년의 경우에는 입법계획 철회 건수 중 동일 내용의 의원입법 발의에 따른 철회가 40건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의원입법의 활성화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5년간 당초 계획 대비 국회 제출 비율이 5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 당해연도에 추가된 건수도 매년 52건~119건에 이르는 등 상당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계획 수립

31) 2020년의 경우 국회 개원 후 6월에 국회에 통보된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초계획 대비 제출비율은 높게, 수정률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32) 새 정부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등 수행 관련 추가 75건, 철회 45건, 그 밖에 동일 내용의 의원입법 발의에 따른 철회 19건을 각각 제외한 수정률은 32.1% 수준임.

시 관계기관 협의 등 정부입법 추진 일정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³³⁾.

□ 정부입법계획은 국회에 통지될 뿐 아니라 관보·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며 정부입법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함에 있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내역사업인 법제업무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법제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포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입법계획(40점), 입법예고(30점)³⁴⁾ 및 하위법령제때마련(30점)³⁵⁾을 3가지 부문으로 하여 평가하고 있음. 이 중 정부입법계획의 비중은 100점 만점 중 40점으로, 정부입법계획 일정 준수율 지표(30점), 정부입법계획 수정률 지표(10점)³⁶⁾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입법계획 수정률

33) 다만, 법제처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입법수요·필요성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한 검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입법계획은 연 단위 계획으로, 전년도 11월에 각 부처가 검토에 착수하고 해당 연도 1월에 확정됨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입법수요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한 입법내용, 일정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점, 입법계획 철회의 주된 사유인 '정부입법계획 내용과 동일한 법안의 의원발의'는 법제처가 관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계획 수정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34) 평가지표: 입법예고 기간 준수율(20점), 국민 제출의견에 대한 답변의 신속성(10점), 국민제출의견에 대한 답변의 충실성(가점, 최대 5점)

35) 평가지표: 하위법령 제때마련 준비율(30점), 하위법령 미리 마련(가점, 최대 5점), 하위법령 제때 미마련(감점, 건당 5점)

(추가 법률안 수) + (철회 법률안 수×5)

36) 10점 - 연초 정부입법계획상 법률안 수*

* 연초 정부입법계획상 법률안이 없는 부처는 분모를 1로 계산

법제처는 대통령 지시사항, 현재 위헌결정 후속 입법, 연관법령 개정 필요 등 긴급한 입법수요 대응을 위한 입법계획 추가, 동일한 내용의 의원입법 발의에 따른 입법계획 철회 등의 경우 법제업무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표(10점)의 비중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법제업무평가 평가부문 및 포상기관 】

연도	구 분		기관명	지급액 (백만원)
2021	종합평가 상위 20% 기관	부	해양수산부	2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1
		처·청·위원회	문화재청	2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1
2022	종합평가 상위 3위 이내 기관	부	통일부	3
			문화체육관광부	1.5
			기획재정부	1
		처·청·위원회	기상청	3
			식품의약품안전처	1.5
			소방청	1
	부문별 우수기관	정부입법계획	방송통신위원회	1
		입법예고	문화재청	1
		하위법령 제때마련	법무부	1
2023	종합평가 상위 3위 이내 기관	가 그룹	식품의약품안전처	3
			환경부	1.5
			행정안전부	1
		나 그룹	공정거래위원회	3
			인사혁신처	1.5
			보건복지부	1
	부문별 우수기관	정부입법계획	고용노동부	1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1
		하위법령 제때마련	기획재정부	1

자료: 법제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함.

- 법제처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입법계획은 정부입법에 관한 부처 간의 공유·협업 및 법제 관련 기관들의 지원 등 정부 내의 효율적 입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바, 계획 준수만을 강조하여 부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경우 다수 부처 연관 법안, 재정 부담 수반 법안 등 사전에 정부입장이 조율될 필요가 있는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 준수와 신속한 입법환경 대응 측면³⁷⁾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견임.

37) (출처: 법제처)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 등 연중에 긴급한 입법수요가 파악된 경우, 입법계획 준수를 위해서 다음 연도에 개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즉시 개정을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6. 법제정비(1032-301)

가. 결산 개요

- 법제정비(1032-301)는 법제처가 법령의 품질제고 및 문제점 개선, 국민의 법령이해도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령정비) 규제 정비 등 법제적 개선사항을 추진하고, 국민법제관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정 및 법제개선 과정에 국민의 참여 보장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국가법령 체계와의 조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 및 문장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
-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에 총 13억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내역사업인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인건비(110-03)에서 900만원이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동일 비목으로 자체전용되었으며, 예산현액 12억 9,800만원 중 12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법제정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제정비	1,307	1,307	-	△9	1,298	1,211	-	87	1,324
법령정비	356	356	-	2	358	315	-	43	494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341	341	-	△2	339	329	-	10	311
알기 쉬운 법제 구축	609	609	-	△9	600	567	-	33	519

자료: 법제처

나. 알기 쉬운 법제 구축 :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알기 쉬운 법제 구축은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 문장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법률용어의 사전차단 및 사후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임.

동 내역사업은 2023년도 예산에 총 6억 900만원이 반영되었고, 이중 900만원이 자체전용되었으며 예산현액 6억원 중 5억 6,700만원이 집행되고 3,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비목별 집행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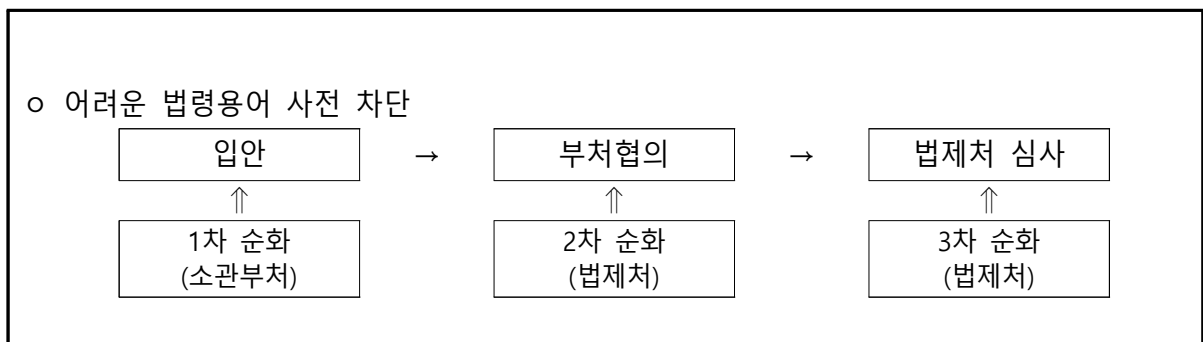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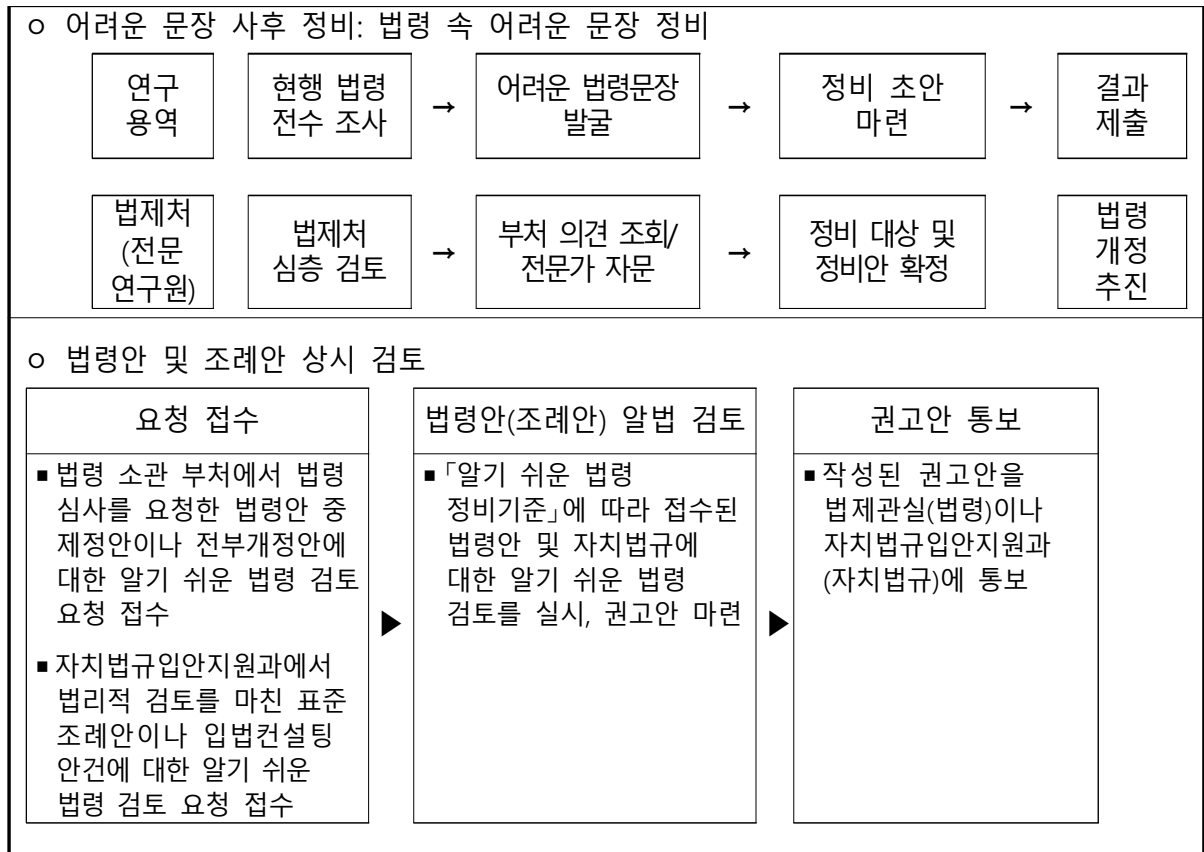
내역사업명	세목명	세목코드	예산 (본예산)	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율
알기 쉬운 법제 구축	내역사업 총액		609	609	600	567	33	93
	상용임금	110-03	203	203	194	174	20	86
	일반수용비	210-01	69	69	69	64	5	93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1	1	-	100
	특근매식비	210-05	6	6	6	6	-	100
	임차료	210-07	2	2	2	2	-	100
	복리후생비	210-12	3	3	3	2	-	100
	일반용역비	210-14	80	80	80	78	2	98
	국내여비	220-01	2	2	2	2	-	100
	국외업무여비	220-02	8	8	8	5	3	63
	사업추진비	240-01	15	15	15	15	-	100
	정책연구비	260-02	180	180	180	178	2	99
	고용부담금	320-03	40	40	40	40	-	100

자료: 법제처

- 구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제 구축 내역사업은 ① 입안 및 부처협의 단계에서의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②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사후 정비, ③ 소관 부처 또는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의 요청에 따른 법령안 및 조례안 상시 검토로 구분할 수 있음.

【 알기쉬운 법제구축 사업 흐름도 】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개선하여왔음. 그러나 법제처가 2022년 2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³⁸⁾ 그동안의 용어 정비 활동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은 법령을 어렵게 느끼고 있고, 이는 길고 불명확한 문장과 복잡한 법령 체계 때문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어 법제처는 2023년부터 기존의 ‘용어정비’에 이어 ‘문장정비’로 주안점을 변경하여 법령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38) 국민 인식조사 결과(’22년 2월/1,230명 대상), 79.7%가 법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그 이유는 불명확한 문장 45.6%, 복잡한 조문 체계 48.5%라고 응답하였음.

- 2023년 법제처는 ‘문장정비’ 사업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3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 2023년 연구용역 개요 】

- (과 제 명) 읽기 쉬운 법령 문장 만들기 연구
- (소요예산) 1억 8,000만원(6,000만원*3건) (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용역 구분) 분야별 법령 개수 등을 고려하여 3개팀으로 구분

구분	대상 분야	법령 예시	금액(법령 수)
1팀	주택·건축·도로·교통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거기본법, 유료도로법, 도로교통법 등(하위법령 포함)	6천만원(101개)
2팀	보건·의료 1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생명윤리법 등(하위법령 포함)	6천만원(115개)
3팀	보건·의료 2	어린이식생활법, 위생용품 관리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혈액관리법 등 (하위법령 포함)	6천만원(115개)

- (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자료: 법제처

해당 연구용역을 통하여 조문 수 기준 총 1,976건의 정비안(각 팀 당 1,161건, 411건, 404건)을 발굴하여 553건의 정비 초안을 선정하였고, 소관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정된 최종 정비안 323건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법령 문장 정비안을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법제처는 ①바른 문장, ②간결한 문장, ③명확한 문장, ④자연스러운 문장, ⑤한눈에 보이는 문장 등으로 정리 대상 및 정비안을 구분하였음.

【 어려운 법령문장 사후 정비 6가지 유형 】

유형	정비 대상	정비안	비고
1유형 바른 문장 쓰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주어-서술어 의 호응이 맞도록 주어 를 분명히 밝힘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분은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1명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분을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1명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해야 한다.	
2유형 간결한 문장 쓰기	의료법	제65조	각 호로 나 누어 간결하 게 정비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재교부할 수 없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2. 제1항제2호·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3.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4.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3유형 명확한 문장 쓰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5조		'이의'가 '송달'을 의미하는지 '異議'를 의미하는지 모호하여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함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u>이의 비용에 대하여는</u>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송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u>송달의 비용에 대해서는</u>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4유형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4조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능동문으로 정비함
	6. 조직은 <u>의사 또는 치과의사</u> 에 의하여 이식되어야 한다는 내용	6. 조직은 <u>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이식해야</u> 한다는 내용	
5유형 한눈에 보이는 문장 쓰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길게 나열된 문장을 계산식으로 정비하여 가독성을 높임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8.7을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6.2를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 × 8.7) +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 × 16.2) +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 × 5.8)	
6유형 (1유형 ~ 5유형 외)	건축물관리법 제29조의2		잘못된 별표 번호를 바로 잡음
	② 감독건축사는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실무수련자가 <u>별표 1</u> 에 따른 실무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를 채웠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건축사는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실무수련자가 <u>별표 1의2</u> 에 따른 실무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를 채웠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

이러한 6가지 유형 모두 법령의 문장을 읽기 쉽게 만듦으로써 일반 국민이 해당 법령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문장정비 사업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법령 자체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문장구조를 읽기 쉽게 수정하여도 문해상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제9조제2항의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검토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안은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기관을 각 호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보다 간결한 문장으로 보이도록 정리하고 있음

각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독성과 통일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조문의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내용을 함께 찾아보아야 문장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문장을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문장정비 예시① 】

정비 대상	정비안
식품위생법 제9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자료: 법제처

□ 둘째, 문장구조 정비로 인하여 법령의 내용이 변경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대한 정비안의 경우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을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의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 이라고 수정하고 있음.

【 문장정비 예시② 】

정비대상	정비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u>제공한 행위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의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u>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신설 당시 검토보고 등을 통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은 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만을 의미하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정비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및 소관부처의 의견 조회를 통해 수용된 내용이므로 실질적인 법령의 내용 변경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이 법제처의 설명과 같이 환자에 관한 것에만 국한되는지는 제3자의 재산상 손해도 포함하는 것인지 문언적으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제처는 문장 정비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의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셋째, 단순히 문장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불필요한 행정 수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임.

예를 들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에 대한 법제처의 문장 정비안을 살펴보면 문장 속의 조사를 바꾸거나 형용사를 추가하는 등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기 위한 경미한 수정을 하고 있음.

【 문장정비 예시③ 】

정비대상	정비안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퇴소 등의 청구 절차) ① 정신요양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 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소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퇴소 등의 청구 절차) ① 정신요양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소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퇴소명령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퇴소명령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14.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각종 기부금과 수익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14.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각종 기부금과 수익금 등을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자료: 법제처

해당 정비대상의 경우 법령문장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에 무리인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정비 활동은 일반 국민이 법령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임.

또한, 법령문장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히 문장구조의 개선만을 위해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이 동원될 수 있으므로, 소관 부처의 법령 개정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 개정 시에 문장 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요약하면, 법령 자체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문장구조를 읽기 쉽게 수정하여도 문해상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문장구조를 정비하려는 시도로 인해 사실상 법령의 내용이 변경될 우려가 있으며, 단순한 문장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임.

따라서 연구용역 1억 8,000만원 등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용어정비’에서 ‘문장정비’ 사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 및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7. 행정법제 혁신(1032-302)

가. 결산 개요

□ 행정법제 혁신(1032-302) 사업은 행정작용 전반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개별법령 정비·분석에 관한 연구와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에 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6억 8,400만원이 집행되고 4,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행정법제 혁신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행정법제 혁신	730	730	-	-	730	684	-	46	747
일반수용비	78	78	-	-	78	76	-	2	75
임차료	10	10	-	-	10	10	-	-	10
일반용역비	20	20	-	-	20	20	-	-	20
국내여비	8	8	-	-	8	8	-	-	8
사업추진비	4	4	-	-	4	4	-	-	4
일반연구비			-	-		-	-	-	190
정책연구비	610	610	-	-	610	566	-	44	440

자료: 법제처

나. 입법영향분석 취지에 맞는 연구용역 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입법영향분석이란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 실효성과 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임.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정비, 정부입법계획반영, 행정기본법 반영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됨.³⁹⁾
- 법제처는 2023년 행정법제 혁신 정책연구비 2억 2,000만원으로 3개 과제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였음.

【 2023년 입법영향분석 연구과제 】

연번	계약일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계약금액	계약방식
1	2023.3.14.	2023년도 입법영향분석 (장애인 등록 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3,636,360원	수익계약
2	2023.3.30.	2023년도 입법영향분석 (위생용품 관리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52,000,000원	수익계약
3	2023.3.30.	2023년도 입법영향분석 (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81,818,180원	수익계약

자료: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이 진행한 2건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위생용품

39) 법제처가 2021년 도입한 제도로,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법제처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과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2021.9.24. 법제처 보도자료).

관리 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입법배경 및 입법영향 분석의 필요성을 살핀 후 통계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해당 제도의 규범적 적정성, 효과성을 검토하여 입법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있음.

【「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목차】

제1장 입법영향분석 대상 및 필요성	제3절 일반인식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
제1절 어린이놀이시설법 개관	1. 조사 개요
1. 어린이놀이시설법의 입법 배경 및 목적	2. 일반 인식조사 분석
2. 어린이놀이시설법의 주요 내용	3. 설문조사 분석
제2절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제4절 전문가의견 조사·분석
제2장 입법영향분석 범위와 방법 및 주요 쟁점	제4장 어린이놀이시설법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제1절 분석 범위	제1절 규범적 적정성 분석
1. 시간적 범위	1. 어린이놀이시설법의 체계성 분석
2. 분석 대상 영역 및 주요 쟁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제도의 규범적 적정성
제2절 분석 방법	3. 어린이놀이시설 의무보험제도의 규범적 적정성
1. 활용 자료	제2절 효과성 분석
2. 분석 방법론	1. 어린이놀이시설법의 효과성
제3장 어린이놀이시설법에 관한 실태조사	2.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의 적절성
제1절 사례 및 판결례 분석	3. 안전관리방안의 효과성
1. 개관	4. 의무보험제도의 효과성
2. 판례 분석	제5장 결론
제2절 통계자료 분석	제1절 규범적 적정성 분석과 효과성 분석 요약
1.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1. 규범적 적정성 분석 요약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이행 현황	2. 효과성 분석 요약
3.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이행 현황	제2절 입법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행 현황	1. 어린이놀이시설 개념 및 범위 규정의 입법 개선 방향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	2. 관련 법률과의 관계 규정의 입법 개선 방향
6. 어린이놀이시설 행정처분 현황	3. 안전관리방안 관련 규정의 입법 개선 방향
	4. 의무보험제도 관련 규정의 입법 개선 방향

-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장애인 등록 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장애인 등록제의 구조와 쟁점을 살핀 후 장애인 등록제에 대한 비교법 및 비교사회정책, 장애인 등록제 개편(2019~2022년)의 영향을 장애인 삶의 질 등을 통해 살피고, 장애인 등록제의 중장기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장애인 등록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장애인 등록제의 구조와 쟁점	21
제1절 장애인 등록제의 형성과 개편	23
제2절 장애인 등록제에 대한 규범적 분석	27
제3절 장애인 등록제의 사회정책적 쟁점	43
제4절 장애 개념에 대한 국제규범 및 법원 판결례 분석	47
제3장 장애인 등록제에 대한 비교법 및 비교사회정책 분석	67
제1절 국외 입법례 및 제도 비교	69
제2절 국내 유사제도 비교	90
제4장 장애인 등록제 개편(2019~2022년)의 영향 분석	107
제1절 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	109
제2절 장애인 등록·등급제 인식조사	126
제5장 장애인 등록제의 중장기 개편 방향	167
제1절 장애인 등록제 개편 중장기 로드맵	169
제2절 장애 인정 기준 확대와 예외적 장애 인정 강화	175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 장애인 등록제 개편 방안	184
제4절 소득·고용 분야 장애인 등록제 개편 방안	196

- 법제처의 입법영향분석 제안요청서에서 해당 과제추진의 취지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현행법상의 장애인 등록제의 개선을 위해 현행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 등록제 관련 입법의 영향보다는 장애인 등록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장애 개념에 대한 국제규범 등 일반적인 정책적 쟁점들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법제처가 실시하는 입법영향분석의 취지 및 분석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임.

- 그러나 법제처는 정책연구 평가결과서에서 동 입법영향분석에 대하여 목적에 부합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충실히 계약내용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다만, 팬데믹으로 인한 장애인 활동과 인식 등에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실제 입법영향을 적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추적 연구가 바람직하다는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임.

- 법제처는 연구용역 본래 취지인 입법영향분석에 맞는 결과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연구 평가를 엄격히 하고 수행기관에 대하여 보완을 촉구하는 등 연구용역보고서를 입법영향분석 체계에 맞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최근 3년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

○ 2020회계연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한 자문 예산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액 및 집행액을 살펴보면, 동 기간 동안 매년 600만원의 자문료가 편성되었으나 집행률은 2016년 15.3%에서 2017년과 2018년 69.2%, 34.2%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는 전혀 집행하지 않았음. - 2020년에는 총 72.6%인 436만원을 10건의 자문에 지출하였으며, 모든 자문이 11월(5건)과 12월(5건)에 집중되어 있고,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 자문료 지급기준액은 '20만원'임에도 지급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러한 자문료 집행의 연말 집중 및 건당 자문료 과다 지급은 집행잔액 소진을 위한 불요불급한 지출로 볼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자문료 지급기준을 준수하고, 연중 균형적·계획적인 자문료 지출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자문 질의 수·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등 자문료가 더욱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2년도에 예산집행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연중 균형적으로 자문료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 ○ 향후에도 연중 균형적·계획적으로 자문료를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 법제처는 당초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사업비가 편성된 기관운영기	주의	○ '21년도 하반기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시 예산과목에 맞게 기관운영기본경비 예산으로만 집행하였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본경비(1011-250) 예산에서 자료집 인쇄 등으로 360만원을 지출하고, 법령심사지원(1032-300)의 일반수용비에서 기념품 구입대금 610만원과 사업추진비 210만원, 총 820만원을 집행하였음. - 정부입법총괄관리(1032) 단위사업에 속해 있는 법령심사지원(1032-300) 예산을 본부기본경비(1011) 단위사업에 속해 있는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사업에서 분할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여 편성한 경비로서, 법령심사지원(1032-300)과 같은 일반사업비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과목에도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향후 사업 목적과 예산과목에 맞는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분할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향후에도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법제처 기관홍보, 법령의견제시 등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제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법제처의 정책홍보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당초 사업목적과는	주의	○ '21년 홍보비의 경우, ① 법제정책홍보를 줄이고 ② 법령홍보를 확대하여, 연말 기준 법제정책홍보 60%, 법령홍보 40% 집행 달성하였음. - 법제정책홍보비:법령홍보비 집행 구성비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차이가 있고, 찾기쉬운 생활법령과 국민아이디어공모제 사업의 경우 개별 사업에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 다는 점 등에서 예산집행상 적절하 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경우 가 장 많은 홍보비(1억 7,250만원)가 지출되었는데, 홍보영상 제작비는 일반수용비(210-01)를 일반용역비 (210-14)로 조정하여 확보하였고, 그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10년부터 운 영되어 인지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 운데 예산 조정 및 연말집행을 통 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한 것이 홍보 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할 때 효율적 예산 집행이었는지에 대하 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기관홍보나 별도로 홍보비가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한 홍보가 아닌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제정보 전달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 하고, 시급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홍보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홍보의 효 과성을 제고하도록 주의할 것		(’20) 82:18 → (’21) 60:40 (단위: %)
○[지적사항] - 2020년 어린이법제관 수료율이 53.4%(525명)에 그치고 있는데, 법 제처는 코로나19로 낮은 수료율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나, 최근 어 린이법제관 사업의 신청자수가 감	제도개선	○ 어린이법제관 행사시 보도자료를 배 포하는 등 어린이법제관 홍보 강화하 였음. ○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토론마당, 모의 의회, 법안만들기 행사 등 양질의 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소추세('18년 2,150명→'19년 1,567명→'20년 1,012명)임을 감안할 때, 어린이법제관 과정에 대한 관심 저하의 원인이 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에 있다고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홈페이지 참여활동이 확대되면서 어린이법제관들간의 다툼으로 자유게시판 이용이 일시 중단되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학생 멘토법제관을 선발했지만, 멘토법제관의 경우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2020년에 선발된 온라인 멘토법제관 중 수료기준에 부합하는 비율은 56.7%(17명)임.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내실 있는 사업운영 및 홍보 강화 등 어린이법제관의 참여 및 수료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어린이법제관의 바람직한 인터넷 토론문화나 언어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방안, 멘토링 내실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법체험활동을 마련하고, - 문자발송 및 지속적인 어린이법제관 참여 독려를 통해 어린이법제관의 수료율 및 참여율 제고하였음. (’21.1. 기준 수료율 46.7% → ’22.1. 기준 수료율 53.4%) * 최종 수료율은 매년 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함에 따라 ’21년도 최종 수료율 61.5% ○ 어린이법제관의 바람직한 인터넷 토론문화 및 언어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안만들기 행사 때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 규칙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하여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고, 토론마당 진행시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을 공지함. ○ 멘토링 내실화를 위해 어린이법제관에 관심 있는 법 전공 대학생을 각 행사별로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어린이법제관 행사를 원활하게 운영함.
○[지적사항] - 2020년도에 법제처는 3~4개 부처의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제도개선	○ 향후 맞춤형 법제업무컨설팅 계획을 수립할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범위와 추진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는 전 부처의 법제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데 그쳤음. - 이는 개별 부처의 상황에 대한 정밀 진단이 미흡하거나 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책에 대한 수용성이 낮을 수 있고,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시사점 및 대안의 경우 상당수가 각 부처의 자체 노력이나 다부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타 부처의 적극적 협조가 없다면 컨설팅 결과의 활용도나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을 것임. - 즉, 법무담당관실 컨설팅 사업은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범위와 추진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범위와 추진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지적사항] - 2020년 법제처가 발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집’은 대국민 홍보 목적의 발간물이라는 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제고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시정	○ '21년부터 국회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제고라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사례집 발간 및 자치법제담당자 역량 발전회의를 개최하였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있음. - 또한 권역별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는 당초 계획과 달리 법령해석국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로 추진하는 법령해석업무 담당자 연찬회와 함께 개최하여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홍보 목적의 사례집 발간이나 계획과 다른 간담회 개최 등 자치법제 역량 제고라는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을 지양할 것		○ 향후에도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 법제처는 2020년 법령용어정비위원회 위원 수당 예산 4,800만원 중 67.7%인 3,249만원을 집행하였음. - 그 중에서도 실제 법령용어정비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지급된 예산은 2,382만원이고, 나머지는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 정비와 관련된 현안 검토를 위한 자문 수당과 그 밖에 법제처의 각종 심사·평가(연구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직 채용 면접 등)를 위한 위원회의 수당으로 지출되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령용어정비위원회 위원 수당의 목적 외 사용	주의	○ '21년 법령용어정비위원회 위원 수당 예산을 사업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였고, * 집행실적 비교 (‘20년) 2,382만원(49.6%) → (‘21년) 4,800만원(100%) - '22년 예산 편성 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집행 현황과 예산 편성이 일치되도록 예산 반영을 완료함. * (‘22년)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알법 관련 검토 수당(210-01, 일반수용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을 지양하고, 기타 자문수당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지적사항]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한 제도인 ‘부처 간 의무협의제도’와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충실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2020년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현황을 살펴보면,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및 협의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는 건수는 법제처가 의견 및 협의 등을 요청한 건수(4,120건) 대비 25.8%(1,063건)에 불과함. -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소관기관의 장은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해당 사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소관기관의 장이 상정을 요청한 안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201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주로 과장급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중심으로 운영되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부처 간 의무협의제도와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당초 취지대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협조 체계를 강	시정	○ (의무협의제도) 각 부처가 의무협의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함.(’21.10.28. 법무담당관 회의, ’21.11.30. 안내공문 시행 등) - 의무협의제도 점검을 통해 파악한 부처 간 협의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 * (’20년) 25.8%→(’21년) 37.5%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차장 주재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21.12.2.)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함. - 향후에도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적극 개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화하는 한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책임성이 요구되는 안건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검토할 것		
○[지적사항] - 최근 4년간 알기 쉬운 법령안 입법 예고 관련 광고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광고비 비중은 2017년 63.3%에서 2020년 58.0%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신문 광고비 비중은 2017년 36.7%에서 2020년 41.9%로 증가하였음. - 최근 모바일 기반의 이동형 인터넷 이용은 고연령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반면, 종이신문 열독률은 2010년 52.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이신문 광고비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라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를 감안하여 온라인광고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알기 쉬운 입법 예고 광고비 비중 확대 하였음. - 온라인 광고비 집행 실적: ('20년) 58% → ('21년) 63% ○ 앞으로도 온라인광고 비중 확대 등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 평균 이행률은 55.5%이며, 연초 계획 대비 입법계획 추가 및 철회 비율이 78%로, 법률안의 국회 제출이 연중 고르게 이루어져 국회에서 총	제도개선	○ 월별 입법계획 추진 실적 점검을 실시하고, 법제업무평가에서 불필요한 철회 등 정부입법계획 수정에 대한 감점 배점을 확대하였음. ○ 법제업무평가 지표를 2022년도 정부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분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법률안 제출계획 통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법제처는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을 등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평가에 반영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9년 법제업무평가에서 정부 입법계획 부문 우수기관으로 포상금을 받았던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법률안 제출계획 대비 이행률이 66.7%로 전체 이행률(72.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법제업무평가 제도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무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지적사항] - 법제처는 동 사업에서 ‘행정법제혁신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검토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 - 그런데 입법안의 내용을 검토하는 최종보고서가 법안의 국회 제출 이후(행정기본법안 국회제출: 7. 8/최종보고서 완성: 7. 31)에 완성되어 보고서 내용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주의, 제도개선	○ 연구용역 추진 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용역 결과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행정법제 혁신 연구용역은 ‘행정법제 혁신(1032-302)’ 사업의 연구용역비(260목)로 추진하여 편성 내역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 ○ 법제정책 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최 시(’22.1.24.~1.28.) 위원들에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 또한, 법제처는 법제정책연구개발(R&D) 사업에서 2020년 하반기에 ‘행정기본법 주요 쟁점 중 공법상 계약 분야 조사·검토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1,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에 연구용역비 1억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법제정책연구개발(R&D) 사업비로 동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은 연구용역 수요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 연구는 7.7.에 시작하여 10.30. 종료되었는데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7.8.)되어 심사를 거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적시 활용도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향후 연구용역 수요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시의성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용역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 개선)/ 법제처는 법제정책 연구개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해당 내역에 맞게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주의)		게 개별 사업에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내역을 안내함으로써, 이를 고려하여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함. ○ 향후에도 예산을 편성된 내역에 맞게 집행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 국가 간 협력과 교류는 상호 간에 이뤄져야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을 통하여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 지급하는 비용이 없음.	시정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 이관을 위해 '23년도 외교부 ODA사업인 글로벌 연수사업에 관련 사업*을 제안하였고, 법제처 중기재정사업계획에 2023년도 이후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 또한 동 사업은 외교부 ODA(인도네시아)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2021~2025년/850만불)과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재정낭비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2023년 예산부터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을 외교부의 대(對) 인도네시아 ODA 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도록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할 것		* (사업명) 인도네시아 법제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적사항] -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내역사업인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에서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 홍보를 집행하여 다른 법제 홍보를 위축시켰다는 이유로 ‘주의’의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2020년도 예산 6억 4,2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행정기본법 제정 홍보에 집행하였음. - 별도 세부사업인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에서도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 홍보예산 3,4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음. - 또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홍보활동을 실시해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한 언급 없이 준비 사실만 홍보하였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해당 내	주의	○ '21년에는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에 홍보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행정기본법 제정·시행('21.3.)에 따라 시행법령 홍보의 일환으로 행정기본법의 내용 홍보에 법제정책알리기의 일부 예산을 집행함.(913만원, 법제정책알리기 전체 예산의 1.3%) ○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시행법령 등 법제정책알리기 사업 목적에 맞게 법령홍보에 예산을 집행함. - '21년 법제정책알리기의 법령홍보비 집행실적: ('20년) 18% → ('21년) 40% ○ 향후에도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역에 맞게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지적사항] -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법령 중 완역 비율이 전체 법령의 5.5%, 중점관리대상 법령의 29.7%로 낮고 언어권별로는 유럽권역 법령의 완역이 부진함. - 또한,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최신동향 정보 제공 건수가 2018·2019년에 비해 40건 가량(30% 정도) 감소하였으며, 정부부처·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 번역에 대한 기관 수요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2016년 191건→2020년 72건)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령의 완역 비율을 상향하고, 최신동향정보 제공 횟수를 확대하는 등 활동을 강화하도록 주의할 것	주의	○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중점관리대상법령* 완역 건수는 '20년 말 기준 200건이나 '21년에는 135건 확대, 총 335건 완역본을 제공하여 완역 비율**을 확대하였음. * 한국과의 경제협력 및 교류 등으로 인하여 법제수요가 많은 국가 등의 주요 법령 ** 완역 현황 : 1,028건 기준 ('20) 200건 (19.5%)→ ('21) 335건(32.6%) ○ 또한, '21년에는 '법제동향 게시 건수 (100건)' 성과지표를 신설하고 연간 총 107건의 최신동향정보*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음. * 최근 3년간 제공현황: ('19) 89건 → ('20) 96건 → ('21) 107건 ○ 향후에도 법령 완역 및 최신동향정보 질적·양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법령정비 사업에서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법제관의 2019~2020년 온라인 회의 참석률은 10% 후반 ~ 30% 중반으로 낮은 편이고, 2020년 경제 분야 국민법제관 중 1건도 의견	제도개선	○ '21년부터 성별·연령대 등에 따라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규 위촉을 확대*하고, 위촉시 성별·연령대를 고려하여 여성 및 청년(만19세~만34세) 비율 확대**를 통해 구성을 다양화하였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을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21.1%로 나타남. - 국민법제관은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민법제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법제 업무에 참여함. - 국민법제관 중 여성의 비중이 26.8%, 20대의 비중이 6.1%에 그치고 있어 여성 또는 청년세대의 관점에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 - 또한 법제처는 법제정비 세부사업에서 국민법제관을 비롯하여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법령안 새로쓰기 등 국민 참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성과지표에는 국민의 법제 참여에 관한 척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국민법제관의 구성에 있어 성별·연령대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법제관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검토할 것		* 신규위촉자 수 (20년) 44명 → (21년) 67명 ** 여성 구성비율 (20년) 26.8% → (21년) 31.0% 청년 구성비율 (20년) 18.2% → (21년) 30.0% ○ 국민법제관 위촉 시 활동의지가 있는 국민법제관 구성을 위해 전년도 활동실적이 저조한 국민법제관을 해촉하고, 국민법제관이 다양한 관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해 온·오프라인 회의, 설문조사, 국민참여심사 등 다양한 활동 추진 및 지속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국민법제관 참여율을 제고*하였음. * 국민법제관 참여율 (20년) 81.8% → (21년) 93.0% ○ 법제처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참여 심사제도 만족도’ 등의 성과지표를 통해 법제정비 사업의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2021회계연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 2021년 1월 체납자의 자진 납부로 건물대여료 · 연체료 · 변상금 및 가산금 등 채권 금액 전액이 회수 되었으나 2010년 건물대여료 연체로 발생한 국가채권이 10년(2011년 말 법제처로 관리전환된 이후 약 9년)이 넘게 회수되지 않고 있었던 것은 국가채권의 관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불필요한 재판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장기 미수납에 따른 기획비용 발생 등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관리에 관한 이해와 교육을 강화하고 주의의무를 다할 것	제도개선	○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등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학습 모임을 가지는 등 업무 담당자의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관리에 관한 이해와 교육을 강화하였고, - 향후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관리 업무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겠음.
○[지적사항] - 법제처는 기관운영경비의 일부를 사용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모든 공무원 근로자에게는 반기별로 5만원에서 15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였음. - 법제처는 반기별 근무성적평가를 받은 공무원 근로자 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	제도개선	○ 전체 공무원 근로자 중 평가결과가 우수한 일부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은 지급방식은 기타운영비를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의 정기적인 지급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을 우수공무원에 대한 상품권 지급방식과 유사하게 전체 공무원 근로자 중 일부에게 지급 금액을 높여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		
○[지적사항] - 2022년 7월 4일 기준 국내 점유율 1위인 포털사이트(네이버)에서 “법제처”, “여기로”, “법제처 여기로”를 검색해도 찾기가 어려웠음. - 2022년 8월 23일 현재는 “여기로” 및 “법제처 여기로”로 네이버 검색 가능하나, “여기로” 사이트에 방문해도 결국 법제처 블로그 링크로 이어지는데 그 개설 취지를 알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홍보플랫폼 “여기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홍보플랫폼 ‘여기로’ 개설(2017.5.) 후 5년간 운영효과와 홍보환경 변화를 감안*했을 때 사이트의 유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중단 조치하였음. * ‘여기로’ 방문자 감소 및 법제처 SNS 활성화 ○ 방문자가 감소하는 ‘여기로’ 대신 국민들이 많이 찾는 법제처 SNS 채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채널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확산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내역사업은 매월 “법나들이”를 발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과 더불어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 여러 단체 및 개인에게 매월 1만부 이상 배포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 2억 3,800만원 중 2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모바일 기기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홍보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국민들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으므로, 책자 배포의 효과성에 대해 고민하고,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분야별 법령정보 필요도를 조사해 배포처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나들이’ 책자 배포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	제도개선	○ 2022년 10월~11월 실시한 2022년 법나들이 만족도 조사에 희망 배포처 및 법령정보 분야 등을 문항에 포함하였음. ○ 응답자의 90.6%가 법나들이를 온라인으로 구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모바일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와 노약층을 위해 책자 발간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노인정, 마을회관, 도서관, 군부대 등이 효과적인 배포처로 추천되었음. ○ 2023년 2월호부터 ①법나들이 전용 SNS채널(인스타그램 등)을 개설하여 온라인 배포 확대 ②우체국을 배포처에서 제외, 도서관(공공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등)을 추가하여 배포 수량을 조정(11,343부 → 8,473부) ③노약층을 위해 책자를 더 큰 규격으로 변경하여 가독성을 제고할 예정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기관 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 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 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 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의 경우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도록 규정함. - 법제처는 영상자료 제작을 위한 비 용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후 일반 용역비로 조정하여 사용하는 예산 집행을 최근 4년간 반복함.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연례적인 일반수용비 세목조정을 자제할 필요 가 있으며, 방송용 홍보영상의 제작 계획 등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하여 홍보영상 제작비의 경우 예산안 편성 시부터 일반용역비로 반영하도록 개 선할 것	주의	○ '23년 예산에 홍보영상 제작예산을 일 반용역비로 편성하였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 이 사업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분야 · 주제별로 요약하여 영어 · 중국어 · 태국어 등 12개의 언어로 해석 ·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어 콘텐츠 서비스는 다른 부처의 재한외국인 대상 관련 사업(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의 이민자 사회통합, 여성 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외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사업 간 차별성은 유지하면서 유기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주의	○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와 타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음. * 생활법령정보 연구 인력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령 교육에 출강(22년, 총12회),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영문 리플릿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포 · 홍보(약 420곳, 4,000부, 10. 21.),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생활법령 콘텐츠 개발방안 등 논의(11.18.), 생활법령정보 및 다누리 홈페이지 상호 배너 등록(11.24.) ○ 앞으로도 타사업과의 차별성은 유지하면서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 ※ (참고)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과는 사업의 대상 · 목적, 서비스 제공 방식 및 내용이 다름. *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 교육과정(정규교육 약 500시간)을 제공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신청 시 가점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 이민 정책적 혜택 제공
○[지적사항]	제도개선	○ 입안부처의 입법계획 수립 시 가이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 최근 5년간 “법률안 제출계획”의 실제 이행률은 53.7%에 불과 - 2021년 산자부, 외교부, 인사혁신처,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안 제출계획 중 한 건도 이행하지 않음. - 「국회법」 제5조의3 ‘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는 정부입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안의 국회 제출이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제처는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각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계획수립에 필요한 조언을 제시하는 등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라인으로 활용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 배포 및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법령입안지원, 원스톱 입법지원 제도 등 법제지원제도 및 활용방법을 안내(수립지침 배포 '22년 10월 31일/법무담당관회의 '22년 12월 9일) -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부처별 입법계획에 대하여 법제처와 법률안 소관 부처 간 사전협의 및 예비검토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부입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제업무평가 지표 중 정부입법계획상의 법률안 철회 시 감점 가중치를 확대(건당 -1 → -1.2)하고, 정부입법 추진성과·노력 부문의 가점 배점을 확대(3점 → 5점)하는 등 전년도 평가지표를 개선·적용하여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부입법계획 이행률 제고를 유도
○[지적사항] - 국민이 법령안의 취지 또는 내용에 관하여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용어·문장을 정비하는 수준의 참여인데, 2018년 이후 각 부처가 법령의 입안단계에서 부처 협의안을	제도개선	○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진단하고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 (구조적 측면) 온라인을 통해 상호 소통하여 숙의된 개선의견 도출 및 입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검토하여 사전에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2021년도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쓰기 국민참여단 의견 23,805건 중 207건만 사전차단 대상용어로 법제처에서 채택되었으며, 법령에 반영된 것은 124건으로 반영률이 0.5%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쓰기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		예고안 외 현행법령, 차별용어에 대한 대체용어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범위 확대 - (운영적 측면) 법제처의 적극적인 방향성 제시 및 용어정비 추진 주도 등 역할 강화,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 확립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 - (효과성 측면) 대국민 설문조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강화 등 국민 체감 성과 도출, 사업성고가 드러나는 성과 지표 개선 및 국민참여단 선발제도 개선 ○ 사업개편방안을 토대로 내년도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 연도별 입법컨설팅 및 조례안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실적을 살펴보면, 입법컨설팅 실적은 2017년 172건에서 2021년 47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조례안 알기 쉬운 법령 검토실적은 2017년 114건에서 2021년 61건으로 감소하여 입법컨설팅 건수 중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마치는 비율은 2017년 66.3%에서 2021년 12.9%로 감소 -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입법컨설팅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눈높이에	제도개선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수행 시 긴급 검토요청 안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례안은 모두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거치도록 개선하였음. - 알기 쉬운 법령 검토실적: ('21년) 61건 → ('22년) 131건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맞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수행 시 긴급 검토요청을 제외하고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거치도록 노력할 것		
○[지적사항] - 최근 4년간 법제교육 사업 총 9건의 연구용역 중 4건의 교재개발 용역을 하나의 업체(㈜메이선)가 수주하였음. - (주)메이선은 2016년 「독립된 전문교육기관으로의 발전을 위한 법제교육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3,500만원), 2017년 「법제교육 운영 계획 고도화 조직진단 및 교재구성 연구」(3,200만원) 등 교재개발 이전에도 법제교육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해온 업체임. - 2021년의 경우 3건의 연구용역 중 2건은 (주)메이선이 수탁하였고, 나머지 1건은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가 수탁하였는데, 두 기관은 동일한 주소지를 사용하고, (주)메이선의 대표이사가 동 학회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는 등 사실상 유관업체에 해당함.	주의	○ 교재개발 용역 수행기관 다양화를 위해 교재개발 용역 입찰공고 홍보수단을 조달청 나라장터 및 부처 웹사이트 홍보 외에 교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전국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에 용역 관련 사항 적극 안내할 계획임. ○ 또한 교재개발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다양한 기관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였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교재개발 관련 용역을 특정 기관이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법제처는 다양한 방법으로 입찰공고 홍보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지적사항] - 행정기본법제 개선(1034-302) 사업 내 일반연구비 예산 1억 8,000만원 중 1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불용함. 1억 6,100만원의 집행액은 2건의 연구용역을 위해 집행됨. 2건의 연구용역 중 “행정기본법 해설서 연구”는 「행정기본법 해설서」로 발간되어 약 3,000부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됨. - 발간 예산으로는 2021년 12월 24일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3,700만원이 지출됨. - 2021년 4월 이미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책자를 발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음에도, 한국행정법학회에 7,100만원을 지출하여 유사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3,700만원을 지출하여 책자를 발간·배포함. - 또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법제처는 행정법제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계획하였음을 고려할 때, 행정기본법 해설서는 당초 사업계획에 어울리는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의	○ 2022년에는 행정법제 혁신 연구 용역 추진 시 연구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 앞으로도 시정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구과제가 선정되도록 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향후 행정 기본법제 연구용역 발주 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할 것		
○[지적사항] - 2018년 이후 매년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법제처는 2018년 이후 매년 정원을 증원하였으나 2019년과 2021년의 현원은 정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2021년은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현원이 오히려 감소 - 법제처가 2020년 외에 2018년 · 2019년 · 2021년 10명 이상 정원을 증원하면서 기존 정원의 효율화 방안, 현원 확보의 한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현원 부족 심화, 인건비 불용액 증대 등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향후 연례적인 휴직 및 파견 인원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정 · 현원차에 따른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하며, 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 정원에 따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22년에는 주기적으로 휴직 등 인사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인력충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공채 4명, 경채 2명 외에도 일반임기제 7명, 전문임기제 2명, 일방전입 8명 등을 적극적으로 충원하였음. - 이로써, '22년 연말기준 정원 대비 결원은 6.2명으로 '21년 말 대비 결원수를 대폭 개선하였음.('21년 △15.3명 → '22년 △6.2명) ○ 또한, 2023년 인건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최근 인건비 불용률을 감안하여 보수 상승분, 처우개선을 및 정원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 인건비 부족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전년동으로 편성하였음.

○ 2022회계연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 공무직 근로자 중 행정지원인력 25명에 대해서 6단계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재직기간 6년 차 이상 근로자가 25명 중 13명임을 고려할 때 현행 호봉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호봉 급간 상승률이 1%에 불과한바, 타 부처 공무직 호봉체계 사례 등을 검토하여 공무직 근로자 호봉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 - 기간제근로자 연구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임금보전방안 마련 필요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공무직 근로자 호봉체계를 개편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최저호봉과 최고호봉 간 기본급 차이를 증가(기존 1만원 → 10만원)시키는 등 장기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체계 개편을 추진함.
○[지적사항] 20대·21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제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이 지연되거나 이견이 충분히 검토·해소되지	제도개선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이견 모니터링을 강화(상시)하고 조정 수요조사(분기별)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 주요 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 법안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부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이견 조정 기능을 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아니한 채 법안이 의결되어 해당 법규정을 근거로 한 실무 집행이 어렵거나 부처 간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화하였으며. - 그 결과, '23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횟수와 협의회 상정 안건수는 모두 증가하였음 * (연도) 협의회/상정안건: ('22년) 48회/76건 → ('23년) 96회/108건 ○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 실적 및 사업계획을 충실히 검토하여 비목별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매년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적정 수준으로 감액하여 연례적인 예산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비목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영상자료 제작을 위한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후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사용하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최근 5년 동안 반복하였음. 또한 법제처는 지난해 「2021연도 법제처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지적(2022. 8. 22.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받은 이후에도,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세목조정을 동일하게 반복하였음(2022. 10. 17. 홍보	제도개선	○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도 예산부터는 비목내역을 개선하여,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하는 영상제작비용을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에 편성하여 운영 중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콘텐츠 제작)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비목별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홍보 영상의 제작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편성 시부터 일반용역비로 반영하도록 개선할 것		
○[지적사항] - 2022회계연도 인건비 예산 총 221억 900만원 중 2,500만원을 동일 사업 내 전용하고 207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3,800만원을 불용함 - 최근 4년간 법제처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인건비가 정원 대비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향후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 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 직급 변동 및 결원 보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인건비를 편성할 것	주의	○ 인력수급 및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등을 통해 '22~'23년 인건비 불용액이 매년 약 10억 원씩 감소하고 있음. ※ 인건비 불용액 ('21) 2,395백만원 → ('22) 1,338백만원 → ('23) 343백만원 ○ 향후에도 합리적인 인력 운영 및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으로 인건비가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예정임.
○[지적사항] 법령해석과 관련한 법령 해석 요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해석 예상 소요기간, 추후 처리 절차 등을 보다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고, 법령해석이 있는 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법원 판결로 법령해	제도개선	○ 법령해석 안건 접수 시 요청자에게 예상 소요기간,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고,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문자로 알려 법령해석 요청자가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법령해석 처리단계별로 진행상황을 안내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석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재해석 요청을 받아들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법령해석은 법령의 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시간과 절차에 따라 정확한 회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령해석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령해석에 관련한 소요기간, 처리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정확한 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해 조치할 것		도록 개선함. ○ 예측 가능한 시간과 절차에 따라 신속한 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정부는 정부입법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2022년도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제출률이 46.1%로 낮고 계획 법안의 수정률 또한 116.4%로 높게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충실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주의	○ 정부입법계획의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정부입법계획 수립 시 소관 부처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법제업무평가에서 입법계획 철회 시 적용되는 감점 가중치를 확대하였음. - 또한, 소관 부처의 책임감 있는 정부입법계획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9월 이후 정부입법계획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의 시급성, 세부 입법추진 일정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음.